4·3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조사 결과

박 찬 식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 1. 머리말
- 2.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유형
 - 1)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 2) 군법회의를 거친 재소자
- 3. 목포형무소 탈옥자의 행방
 - 1) 재소자의 복역 실상
 - 2) 탈옥사건 이전 출소자 실태
 - 3) 탈옥사건과 탈옥자의 행방
- 4. 한국전쟁 직후 재소자의 행방
 - 1) 탈옥사건 이후로부터 전쟁 이전까지 출소자 실태
 - 2) 형무소 재소자의 이송
 - 3) 한국전쟁 직후 집단 총살 희생자
- 5. 제언 진상조사의 필요성

1. 머리말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출간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2만 5,000명에서 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행방불명자의 피해 실태를 밝혀낸 진상보고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과거사 정리의 시금석'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이 신고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보기 힘든 지역 공동체의 전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진실화해기본법이 시행된 이후과거사정리위원회가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접수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인이 4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가히 제주지역 공동체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4·3진상규명과 희생자 조사의 모범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 한계점 중에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① 4·3의 전개 과정에서 검거와 학살을 피해 도피했다가 행적을 감춘 사람 ② 초토화작전 전개 시기 총살 암매장·수장된 사람 ③ 입산해서 무장대로 활동하다가 사망한사람 ④ 군법회의 사형수로서 총살 암매장된 사람 ⑤ 형무소 재소자로서 한국전쟁직후 총살 암매장된 사람 ⑥ 형무소 재소자로서 한국전쟁직후 총살 암매장된 사람 ⑥ 형무소 제소자로서 한국전쟁 직후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어 행적을 감춘 사람 ⑦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되어 총살 암매장·수장된 사람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 산컨대 행불자의 수는 적어도 5천명은 넘을 것이다. 이들이 산으로 은신하거나 타 지역으로 피신하여 있는 동안 그 가족들은 대리 학살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어린 자식들은 뒤에 엄청난 연좌제의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이들 행불자에게는 '범죄인'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다. 과연 그러한 가. 당시 공무원이나 교사들 가운데 단지 서청단원에게 밉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예비검속 대상이 된 경우가 허다하였다. 1949년 3월이후 '내려오면 살려 준다'는 선무공작에 따라 하산한 청년들을 옥석을 가리지 않고형무소로 보내버렸다. 이들 중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왜 죄인으로 선고되었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예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형량도 형무소에 가서야 들었다고

¹⁾ 진상조사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였다. 김순태,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법학』 24, 2003; 박태균, 「4·3의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제주4·3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3; 이재승, 「인권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본『4·3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위와 같음; 박찬식, 「4·3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문』.

하다.

이러한 실상은 그동안 철저히 감추어져 왔다. 극심한 피해의식 때문에 이들 유가족들은 아버지·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여 왔다. 사망일도 몰라서 생일날에 제사를 지내며 숨죽이며 살아왔다. 4·3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행방불명 희생자들은 아직도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제 직접 정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소홀히 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암매장지 유해 발굴은 물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일대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발표문은 이런 취지에 맞추어 지금까지 규명이 미진한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각 지역별 형무소 재소자들의 행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구형무소·부산형무소 등 형무소 재소자의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밝혀졌다. 그러나 행형자료 및 증언에 근거하여 개괄적인 사실 및 정황을 밝혀낸 정도에 그쳐서 세부적인 개별 조사까지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 등 인민군에 의해 석방된 재소자들의 행적과 목포·광주·전주·김천·진주·부천형무소 등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소자들은 만기, (의병) 형집행정지, 감형 등의 조치로 출소하기도 하였지만, 1949년 9월 탈옥사건으로 사망하거나, 1950년 한국전쟁발발 직후 총살되는 등 비극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본 발표를 통해이들의 실태와 행방을 각종 자료에 의거해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에 대해서는 4·3진상조사보고서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2) 최근 이 사건을 단독주제로 삼아 검토한 석사학위논문도 발표되었다.3) 그러나 진상 조사보고서는 대략으로 사건을 소개하고 제주출신 탈옥수의 수치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김양희의 논문은 사건의 배경 및 경과 등 전모를 밝힌 연구 결과이지만, 4·3관련 재소자에 대한 개별 추적까지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수형인명부』등 행형 자료 인용에도 다소 오류가 발견되는 아쉬움이 있다.

본 발표문은 『목포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국가기록원 소장)와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목포교도소 소장) 등 기본 행형자료를 일일이 검색하여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당일 출소한 것으로 기재된 제주출신 재소자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새로이 입수한 『6·25당시 탈옥수명부』4)에 기재된 4·3연루자를 검색하여 한국전쟁 직

²⁾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469-470쪽.

³⁾ 김양희, 「1949년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⁴⁾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1951년 법무부 검찰과에서 작성한 명부로서, 서울(서대문)형무소, 마 포형무소, 목포형무소 등에서 전쟁 발발 직후 없어진 재소자를 형무소 복구 과정에서 조사·기록한 자료이다. '탈옥수'라고는 하였지만, 이들이 자발적 탈옥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서대문·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인민군에 의해 옥문이 열려 석방된 것이고, 목포형무소 명부는 1949년 탈옥사건 연루자가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행방불명된 사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라도 지역의 정황과 4·3관련자 유가족의 증언 등에 비추어볼 때 목포형무소 명부에 오른 사람들은 전원 총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점은 뒤에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후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신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글 내용 중 「2장.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유형」 부분은 원래 필자가 4·3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초고를 작성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와 많은 부분이 겹칠 것이지만, 새롭게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수정·보완했음을 밝혀둔다. 이글을 작성하는 데 위의 행형자료 외에도 당시 탈옥사건을 체험한 출소자들의 증언자료, 4·3위원회에 유가족의 희생 정황을 적어서 제출한 신고서 내용 등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작고하신 부영성 선생의 회고록 중 탈옥사건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본 발표문 뒤에 수록했음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글이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을 찾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다행이겠다. 나아가 다른 형무소 재소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행방불명자 전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유형

제주4·3사건의 기점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로부터 1948년 4월 3일을 거쳐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4·3사건 관련 재판으로는 제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법원 등에서 치러진 일반재판과 미군정 당시 행해진 군정재판,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 등이 있었다. 또한 1948년 12월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예외적으로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가 있었다.

4·3사건 관련 재판을 받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벌금형·구류·집행유예 등을 언도 받았지만, 금고·징역 등의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이들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도 하였지만, 열악한 형무소 수감 환경 때문에 옥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를 처분하라는 상부 명령에 따라 총살당하였다. 이들 형무소 재소 중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희생 일시·장소·경위 등을 알 길이 없어 그 유가족들은 그들을 행방불명 희생자로 4·3사건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목포형무소는 4·3관련 수형인들이 가장 많이 수감되었던 곳이다.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은 대부분 이곳에 수감되었고, 군법회의 대상자들 가운데도 다수의 사람들이 갇혀있었다. 특히 목포형무소에는 중형에 처해진 군법회의 대상자들이 대구·김 천·진주·부천형무소 등으로 옮겨가기 전 일시적으로 수감되기도 하였다.

1)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① 4·3 이전 시기(1947. 3. 1~1948. 4. 2)

1947년 3·1절 28주년 기념식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6명의 총격 사망 사건과 그에 뒤이은 3·10 총파업에 가담한 자 가운데 주동자는 기소되어 1947년 4월 3일부터 군정재판이 시작되었다. 1947년 4월 14일에는 군정재판이 조선인 법정으로 이관되어 제주도에서는 3·1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월 21일부터는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연속적으로 3·1사건 관련 재판이 실시되었다. 결국 1947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3·1사건 공판은 5월 23일 종결되었다. 형이 내려진 사건 관련자는 징역·금고형 52명, 집행유예 52명, 벌금형 56명, 기타 기소유예, 불기소 등 도합 328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5월 23일까지의 현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받은 사람은 총 162명이며, 징역형 40명, 집행유예 47명, 벌금형 75명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3·1사건 공판이 5월 23일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계속된 미군정의 검거령에 따라 검속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3·1사건과 연루되어 형을 받았다. 현존 판결문을 검토하면, 5월 23일 이후로부터 1947년 말까지 계속된 3·1사건 관련 수형자는 83명(징역형 19명, 집행유예 21명, 벌금형 43명)에 이른다. 결국 지금까지 확인된 현존 판결문 자료에 근거한다면, 3·1사건 발발 이후 1947년 말까지 3·1사건 수형자는 총 245명에 이른다. 각종 행형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을 받은 59명은 거의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의 형기는 짧게는 4개월로부터 길게는 1년을 넘지 않았다.

3·1사건 재판이 치러진 이후에도 1947년 후반과 1948년 초반에 제주지역에서는 민간인과 미군정 경찰 사이에 정치·사회적 마찰이 계속 일어났다. 대표적 사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47년

- 6월 2일 제주여중생들의 동맹휴학 사건
- 6월 6일 종달리 민청원들이 경찰관 3명을 집단 폭행
- 6월~7월 초등교원양성소 학생, 조천중학원 학생, 각 마을 청년들에 의한 삐라 살포 사건
- 7월 3일 제주농업중에서 학교 당국과 학생간 대립 분규 사건
- 7월 말 한림면 명월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곡수집 거부
- 8월 8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마을 청년들이 곡물수집 관공리 3명을 집단 폭행
- 8월 13일 조천면 북촌리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 쌍방에서 부상자 발생
- 8월 14일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연행 검거 사건

^{5) 『}濟州新報』, 1947년 5월 26일.

□ 1948년

- 2월 7일~10일 전도적으로 '2·7투쟁' 전개, 경찰과 무력 충돌
- 2월 9일 안덕면 사계리에서 마을청년들이 경찰관 구타
- 3월 6일 조천지서에 연행된 조천중학원생 김용철, 고문 치사
- 3월 14일 모슬포지서에 유치 중이던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 고문 치사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4·3사건위원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4·3사건 관련 판결문 가운데 3·1사건 재판을 포함하여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은 총 480명이다. 이들을 선고 형량으로 구분해서 보면, 징역·금고형 82명, 집행유예 150명, 단순 벌금형 248명이다. 이 시기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3·1사건 이후 재판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1947년과 1948년 초에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1948년 말까지는 목포형 무소에서 출소한 뒤 제주에 돌아오거나 일본·타지방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당시 재판으로 인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는 없었다.

② 4·3 이후 시기(1948. 4. 3~1954. 9)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습격을 시작으로 사건은 경찰과 무장대의 상호 무력 충돌로 격화되어 갔다. 4월 말로부터 5월 초까지 소강 상태를 지나서 다시 5·10 선거반대 투쟁에 나선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단체·선거관리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5·10 선거가 제주도 두 개 선거구에서 무효로 처리되자, 미군정은 제주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응원 경찰 및 진압 병력을 더욱 강화시켜 파견하였다.

자연스레 경찰 당국에서 검거하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형사사건이 많아서 현지 심리원과 검찰진으로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앙 사법부에서는 5월 26일 제주지역에 특별히 심판관과 검찰관을 파견하였다. 심판관으로는 서울고등심리원 심동구심판관, 지방심리원 양원일 부장심판관, 최동욱·황성희·김상묵 심판관 외 서기 3명과 검찰관으로는 박근영·이주신·안희경 등 세 검찰관과 서기 3명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5월 3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시켰다. 31일 하루에 4·3사건 관계 4건의 심리를 마쳤는데, 사형 1명, 징역 10년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5년 1명 등 검찰관 측 구형이 있었다.7 서울로부터 내도한 판검사 일행 12명은 6월

^{6) 『}漢城日報』, 1948년 5월 23일; 『朝鮮日報』, 1948년 6월 4일.

^{7) 『}朝鮮日報』, 1948년 6월 4일.

11일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 37명에 관련된 42건을 판결하였다.

서울에서 파견된 판·검사 일행이 재판을 마치고 귀경한 뒤에도 제주지방법원 단독으로 재판을 행하기는 했지만, 500명에 달하는 혐의자들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재판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요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광주로 옮겨서 재판을 치르자는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일부 피고인들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23일 제주검찰청에서 심문을 받던 4·3사건 피의자 32명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9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 부검사장 김 영천 검사로부터 대법원장 명령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8) 9월 3일에는 추가로 40명이 광주로이송되었다.9)

1948년 하반기 제주도로부터 이관된 제주 4·3사건 관련 피고인은 총 131명(74건) 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1948년 10월 1일부터 1948년 12월 29일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속행되었다.

이들 피고 총 131명(74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사형 1명, 무기징역 5명, 징역 8개월~15년 82명, 집행유예 8명, 무죄 19명 등이다. 1948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에는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군법회의 외에 민간재판은 실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민간재판을 계속한 것은 계엄 선포 전의 행위로 인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계엄령이 끝난 1949년 이후 4·3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다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49년 이후 1954년 4·3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4·3사건 관련 민간재판 실시에 대한 기록은 각종 신문기사에 누락되어 있어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제주4·3사건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4·3사건 관련 판결문을 분류해 보면,1949년부터 1954년까지 총 599명 피고인 중에 361명이 실형(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집행유예 238명이다.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형 1명,징역 10년 2명,징역 8년 1명,징역 7년 7명,징역 6년 1명,징역 5년 12명,징역 4년 12명,징역 3년~3년6월 42명,징역 2년~2년6월 46명 등이다.

이상의 4·3사건 관련 민간재판을 대별해보면 징역 2년 이상의 장기 수형인은 서울 출장 제주지방법원 판결 때 40여 명,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80여 명, 1949년 이후 1950년 6월까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 80여 명 등 총 2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은 80여 명은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것으로확인된다.

그러므로 일반재판을 받은 목포형무소 재소자는 1949년 탈옥사건과 1950년 6·25 발발을 거치는 과정에서 12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8) 『}東光新聞』, 1948년 9월 8일.

^{9) 『}國際新聞』, 1948년 9월 11일.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탈옥사건과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 행방불명되었다.

2) 군법회의를 거친 재소자

제주4·3사건 당시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다(이하 '1948년 군법회의', '1949년 군법회의'로 칭함)는 문서가 남아 있다. 즉,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군법회의 명령」으로서, 여기에는 군법회의 관련 내용및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

「군법회의 명령」에는 군법회의 명령서와 함께 2,530명(1948년 군법회의분 871명, 1949년 군법회의분 1,659명)의 군법회의 피고인 명부가 별첨되어 있다. 명령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죄과, 범죄사실),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인쇄되어 있다. 별첨 피고인명부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항변·판정·판결 항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항목 등으로 나누어져서 표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사형수들의 명단도 따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인천·대전·대구·전주·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어 재소자 생활을 하였다.

① '1948년 군법회의'

1948년 7월 제11연대에 배속되었던 제9연대를 재편성한 뒤 제9연대(연대장 송요찬 소령)는 제주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11일에는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부사령관 송요찬 소령)가 설치되어 대대적인 군경합동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광주 제5여단장인 김상겸 대령이 제주도경비사령관이 됨으로써 제주도 토벌대 지휘부는 연대장 급에서 여단장 급으로 격상되었고, 토벌도 더욱 강화되었다. 제주도경비사령부는 제9연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6연대 1개 대대, 해군부대, 제주경찰경비대를 총괄 지휘하였다.10) 또한 제주도경비사령관에게는 '숙청 행동간 고등군법회의의 관할 권할'도 부여되었다.11) 경비대총사령부는 나아가 제5여단 예하부대인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파하도록명령했다. 이러한 제주도에 대한 토벌 강화는 10월 19일 여순사건의 발발로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제9연대 중심의 강력한 토벌작전은 예외없이 수행되었다.

제9연대장 송요찬이 10월 17일에 내린 포고령에 따라 제주도 중산간지대 민간인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고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작전의 대상에는 무장대뿐만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도 포함되었다. 더욱이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계엄령이 해제된 12월 31일까지 제9연대는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

^{10) 『}육군역사일지』 2집, 1948년 10월 11일.

^{11) 「}육군총사령부 일반명령」제2호, 1948년 10월 27일.

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12)

이 시기 제주도내 각지에서 군·경 당국에 검속된 4·3사건 관련 혐의자들이 각 경찰서나 수용소 등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 제9연대장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83명이 생포되었다고 보고하였다.13)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제주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에서 민간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17일 계엄령이 내릴 때까지 미결수로 수감되었던 사람들이나 계엄령이 내린 이후 체포된 사람들은 거의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 넘긴 것으로 되어 있다.

「군법회의 명령」에 의하면, '1948년 군법회의'는 계엄령이 내려졌던 1948년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2차례 열렸고, 그 명목은 계엄고등군법회의였다. 이 군법회의에서 민간인 871명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처음에는 사형 총 100명, 무기징역 102명이었으나, 최종 형 확정 때 사형 62명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 97명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문서상 '1948년 군법회의'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9명(4.4%), 무기징역 67명(7.7%)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20년 97명(11.1%), 징역 15년 262명(30.0%), 징역 5년 222명(25.5%), 징역 3년 4명(0.5%), 징역 1년 180명(20.7%) 등이다.

「군법회의 명령」에 적혀진 871명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형에 처해진 38명을 제외하고 각각 목포·마포·서대문·대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무기징역 67명은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형무소수감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4명은 『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1949년 3월 4일에 대구형무소에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 67명은 목포형무소에 2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대구형무소와 기타 형무소로 이송된것으로 추정된다. 징역 20년으로 적혀 있는 97명 역시「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1949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를 보면 이들 대부분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음이 확인된다.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목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총 453명이다. 이들은 징역 15년 202명, 징역 5년 157명, 징역 3년 4명, 징역 1년 90명 등이다. 그런데 징역 15년 202명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지 얼마 없어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8·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이들이 대구형무소에 재소 중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② '1949년 군법회의'

정부는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흥 대령)를 설치하여

¹²⁾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¹³⁾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NARA.

5·10 재선거 전에 제주사태를 평정하고자 하였다. 유재홍은 부임하자마자 해안지대에 주둔하던 제2연대를 무장대와 직접 대치하게끔 산으로 올려보냈다. 한편으로 그는 사면계획을 채택하여 중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사살을 중지하도록 했다. "작전 중에 체포됐거나 자발적으로 투항했거나를 불문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든 사람을 구금"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14) 3월 초부터 피신 주민들에 대해 귀순을 권유하는 전단이 살포되었다.

당시 한라산에는 무장대뿐만 아니라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산간지역 거주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었다.15) 이들은 제9연대의 무리한 소개작전을 피해 생존을 위해 피신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선무공작에 따라 많은 입산 피난 주민들이 속속 하산하여 왔다. 3월 한 달만에 1,500여 명이 내려왔다. 내무부차관의 5월 22일 작전 결과 발표에 의하면, "3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귀순자 총수는 6,014명이며, 그 중 남자는 2,974명 여자가 3,040명이며 석방자 수가 4,163명, 현재 수용자 수는 1,851명"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주읍내와 서귀포의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당시 하산자들의 수용 장소는, 제주읍내의 경우 주정공장(동척회사) 창고가 가장 컸으며, 그밖에도 농업학교, 일도리 공회당, 용담리 수용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서귀포에는 정방폭포 위 감자공장과 천지연 부근의 창고가 수용소로 활용되었다.

'1949년 군법회의'는 위와 같이 한라산에 피신해 있다가 하산해 제주도내 각지 수용소에 감금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것으로 되어있다. 「군법회의 명령」에 의하면, '1949년 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고, 그 명목은 고등군법회의였다. 이 군법회의에서 민간인 1,659명에 대해 한 사람도 어김없이 국방경비법 제32·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문서상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1,659명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45명 (20.8%), 무기징역 238명(14.3%)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15년 308명(18.6%), 징역 7년 706명(42.6%),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미확인 2명 등이다. 대체로 계엄령하 '1948년 군법회의'보다 더욱 강경한 처리를 했다.

「군법회의 명령」에 적혀진 1,659명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살된 249명을 제외하고 각각 마포·대구·대전·목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마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223명으로서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여기에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로 이송된 사람이 96명이므로, 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총 319명이었다. 대구형무소에는 징역 15년 297명, 대전형무소에는 징역 7년 300명, 목포형무소에는 징역 7년 215명이 수감되었다. 19세 이하의 소년들은 복형장소가 인천형무소인데, 무기징역 12명, 징역 15년 12명, 징역 7년 170명 등 총 194명이 수감되었다.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

¹⁴⁾ 위와 같음.

¹⁵⁾ 劉載興(82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당시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 2002. 9. 6. 채록) 증언.

는데, 무기징역 3명, 징역 7년 21명,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등 총 84명이다.

이상 두 차례 군법회의를 거친 목포형무소 재소자는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 251 명(총 453명 중 대구형무소 이송자 202명을 뺀 숫자),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215 명 등 총 466명에 달한다. 이들도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120명과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탈옥사건과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 행방불명되었다.

결국 1949년 9월 탈옥사건을 앞두고 목포형무소에는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120 여 명, 두 차례 군법회의를 거친 재소자 466명 등 총 600여 명의 제주출신 재소자 가 있었다.

3. 목포형무소 탈옥자의 행방

1) 재소자의 복역 실상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1949년 10월 4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목포형무소가 저와 같이 된 원인은 첫째 원인은 죄수들에게 대우를 잘못한 점이 한가지입니다. 그 관계로 지금 말씀 여쭙겠는데 이전까지 목포형무소는 600 명밖에 수용 못할 곳을 문제 당시에는 1,421명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형무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잘 수밖에 없었고 누워서 잘 처치(處置)가 못되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거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중에 좀 온순한죄수는 한 방에다가 한 30~40명을 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우리는 잘 수도 없다, 먹을 수도 없다,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기왕 죽을 바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자고 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는 목포형무소가 600명 수용능력이 있는 데에 1,421명이 된 것은 제주도에서약 600명 가량의 반란군의 죄수가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다른 곳으로보낼 수가 없어서 목포형무소에 두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음모를 한 것 같습니다.16)

형무소의 과밀로 인한 재소자의 불만은 목포형무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949년 8월 현재 전국 19군데 형무소에 24,0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었다. 서울신문 기자가 대구·부산·광주·목포·전주·군산·대전 등 남한의 7개 형무소를 방문 취재한

^{16) 『}국회속기록』, 제5회 제13호, 1949년 10월 4일.

결과, 모두 정원을 $40\sim50\%$ 초과하여 감방 한 평당 수용자 수는 $6\sim8$ 명으로 과밀하였다. 대구형무소의 경우 1,500명 정원에 3,068명이 수감되어 강당·창고·작업장을 모두 감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17)

군부에서 관리하던 죄수의 수가 많았던 점도 문제였음을 법무부 장관은 지적하고 있다.

최대수용력이 2만 4,000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2만 2,000명을 수용하는 예산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 있는 2만 2,000명에 대해서 하루에 주식비 부식비 합해서 하루에 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당국으로서는 도저히 이 70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고통을 느끼는 중에 6월 6일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때에는 수용이 이미 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2만 2,000명 중에는 군 (軍)죄수가 한 3,000명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7월 말일이 되면서 대개 전부 3만 명 가량인데 군 죄수가 7,0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뵈옵고 군 대의 치형(治刑)은 법무부에서 맡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지 조치해 주십사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의 말씀이 군의 치형은 일반치형과 다르니 군 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서 공문을 군부에 발(發)했습니다. 그후에 군 부에서가 아시다시피 법무부로서는 2만 2,000여명밖에 예산을 받은 것이 없고 지금 수용력으로는 2만 4,000명이지만 일제시대에는 만명밖에 없었습니다. 군과 일반치형과는 성질이 달라서 일반치형은 강폭하지 않지만 군대라든지 반란군은 그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야지 지금 현재의 형편으 로서는 전력을 다해도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토의한 결과 회답이 오기 를 지금 국군이 10만명인데 7,000명의 군관계자를 수용한다면 약 3,000명가량의 간수(看守)를 가져야 되겠으니 그러한 적지 않은 만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명이라면 1개 사단인데 그러면 10만명에서 1만명을 빼고 9만명으로써 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고 지금 38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18)

미국 측에서도 "목포형무소는 한국의 유일한 초과밀 형무소가 아니며 형무소 조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디서든지 유사한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정치범들을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평하였다.19)

^{17) 『}서울신문』, 1949년 8월 7일.

^{18) 『}국회속기록』, 제5회 제13호, 1949년 10월 4일.

^{19) &}quot;Summary of Politic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1949," Enclosure 1 to Despatch No. 621, dated October 7, 1949, from American Embassy to State Department, Seoul, Korea.

2) 탈옥사건 이전 출소자 실태

<표 1-1> 만기·형집행정지·감형으로 인한 출소자(일반재판, 1947. 6~1949. 9. 13)

번 호	성명	주거	형량	판결일	출소일
1	한순화(韓順和)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10월	19470404	19480203
2	강대형(姜大衡)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	징역4월	19470428	19470828
3	김영홍(金永鴻)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징역6월	19470428	19470922
4	우성대(禹聖大)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	징역4월	19470428	19470829
5	고관호(高冠浩)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	징역4월	19470428	19470828
6	허두문(許斗文)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징역1년	19470428	19480427
7	이군실(李君實)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	징역6월	19470428	19471030
8	김용원(金溶元)	북제주군 제주읍 용담	징역6월	19470428	19471030
9	김임생(金壬生)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징역6월	19470428	19471030
10	강창우(姜昌祐)	북제주군 제주읍 삼도	징역6월	19470428	19471030
11	김재은(金在殷)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징역6월	19470428	19471025
12	한석철(韓晳哲)	남제주군 서귀면 서귀	징역6월	19470428	19471030
13	박신원(朴新元)	북제주군 한림면 고산	징역6월	19470428	19471030
14	오태병(吳泰柄)	남제주군 서귀면 동홍	징역7월	19470428	19471101
15	이정규(李廷奎)	북제주군 한림면 귀덕	징역8월	19470428	19480101
16	김용관(金龍寬)	북제주군 애월면 하귀	징역6월	19470428	19471101
17	김성추(金性秋)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	징역10월	19470428	19471226
18	송태삼(宋泰三)	남제주군 서귀면 서귀	징역8월	19470428	19480101
19	오동학(吳東鶴)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	징역8월	19470428	19480101
20	문달화(文達華)	남제주군 대정면 하모	징역6월	19470428	19471101
21	허기용(許起龍)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	징역10월	19470428	19471226
22	김하구(金河龜)	북제주군 제주읍 삼양	징역6월	19470428	19471101
23	장진봉(張珍奉)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	징역8월	19470428	19480101
24	양치명(梁致明)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	징역6월	19470430	19471030
25	이창욱(李昌旭)	북제주군 제주읍 용담	징역8월	19470430	19471230
26	김영호(金永昊)	북제주군 구좌면 세화	징역6월	19470430	19471101
27	박원길(朴元吉)	북제주군 구좌면 덕천	징역6월	19470430	19471101
28	강팽성(康彭聖)	남제주군 중문면 강정	징역7월	19470430	19471130
29	김평원(金平遠)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	징역5월	19470430	19470930
30	이신호(李辛祜)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	징역6월	19470430	19470906
31	이운방(李運芳)	남제주군 대정면 하모	징역10월	19470430	19480301
32	강원길(姜元吉)	북제주군 구좌면 세화	징역6월	19470430	19471101
33	고성춘(高聖春)	북제주군 제주읍 이도	징역8월	19470502	19470922
34	진해생(秦亥生)	남제주군 대정면 하모	징역6월		19471110
35	김태봉(金泰奉)	남제주군 서귀면 서귀	징역8월	19470515	19480115
36	오형택(吳亨澤)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	징역8월	19470519	19480119
37	정동일(鄭東日)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	징역6월	19470628	19471227
38	정대홍(鄭大弘)	남제주군 대정면 동일	징역7월	19470630	19480130
39	김시보(金時輔)	남제주군 대정면 무릉	징역6월	19470630	19471230
40	コテ五(金斗杓)	남제주군 대정면 보성	징역6월	19470704	19480104
41	김두규(金斗奎)	남제주군 대정면 무릉	징역5월	19470704	19471204
42	김민식(金玟植)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	징역7월	19470704	19480207
43	조익헌(趙益憲)	남제주군 대정면 신도	징역8월	19470709	19480208

		주거	형량	판결일	출소일
44	송인송(宋仁松)	북제주군 애월면 구엄	징역5월	19470709	19471209
45	채희조(蔡熙祚)	북제주군 구좌면 종달	징역1년	19470710	19480626
46	문춘옥(文春玉)	남제주군 대정면 일과	징역8월	19470715	19480208
47	좌창송(左昌松)	북제주군 한림면 신창	징역6월	19470731	19480131
48	김인평(金仁平)	남제주군 중문면 상예	징역7월	19470805	19480305
49	양치윤(梁致允)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	징역8월	19470813	19480421
50	현순종(玄淳鍾)	북제주군 제주읍 노형	징역6월	19470816	19480216
51	현채홍(玄彩洪)	북제주군 제주읍 노형	징역8월	19470816	19480416
52	김병기(金秉祺)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징역6월	19470819	19480229
53	이달군(李達君)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6월	19470826	19480226
54	이사훈(李仕勳)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	징역4월	19470827	19471227
55	양하석(梁厦錫)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	징역4월	19470827	19471227
56	김두옥(金斗玉)	남제주군 대정면 안성	징역5월	19470923	19480223
57	한문현(韓文玄)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	징역8월	19471008	19480529
58	김병규(金丙圭)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	징역8월	19471008	19480529
59	고두옥(高斗玉)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	징역8월	19471031	19480106
60	김두석(金斗石)	북제주군 제주읍 도두	징역6월	19480318	19480819
61	부정록(夫正錄)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	징역10월	19480322	19481022
62	김덕수(金德洙)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	징역8월	19480322	19481004
63	오경록(吳庚綠)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	징역6월	19480402	19480902
64	오원하(吳元河)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	징역6월	19480402	19480902
65	강시인(姜時仁)	남제주군 중문면 상예	징역10월	19480416	19480929
66	김창생(金昌生)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	징역8월	19480417	19481008
67	오관형(吳官衡)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6월	19480427	19480929
68	김성훈(金聖訓)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6월	19480430	19480929
69	고승현(高昇鉉)	남제주군 서귀면 서홍	징역8월	19480514	19480929
70	정기탁(鄭岐卓)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10월	19480528	19480929
71	김경환(金敬還)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10월	19480528	19480929
72	홍만선(洪晩善)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10월	19480528	19480929
73	박석산(朴石山)	북제주군 추자면 영흥	징역7월	19480529	19480929
74	윤태린(尹泰麟)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	징역7월	19480529	19480929
75	황명혁(黃明赫)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	징역7월	19480529	19481228
76	박필현(朴弼現)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6월	19480602	19480929
77	한순재(韓順才) 정양추(鄭良秋)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1년6월 징역10월	19480607	19490518
79	전상영(全尙榮)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19480607 19480609	19480929 19481005
80	문창석(文昌石)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정역1년	19480609	19481003
81	문달오(文達五)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년	19480609	19480929
82	できて(大足丘)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0609	19480929
83	문학서(文學瑞)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19480609	19480929
84	이승병(李承柄)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0609	19480929
85	고달영(高達榮)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0609	19480929
86	조창범(趙昌範)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0609	19480929
87	강공창(姜公昌)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0609	19480929
88	김태경(金太京)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0609	19481004
89	한석기(韓哲基)	북제주군 제주읍 삼도	징역2년	19480609	19490905
90	김완수(金完洙)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	징역1년	19480609	19490124
91	현행주(玄行珠)	남제주군 서귀면 서홍	징역10월	19480624	19490104
92	김희수(金禧洙)	북제주군 제주읍 도두	징역5년	19480624	19480929
93	김서규(金西奎)	북제주군 구좌면 동김	징역10월	19480625	19480929

번 호	성명	주거	형량	판결일	출소일
94	현봉석(玄鳳錫)	남제주군 서귀면 서홍	징역8월	19480705	19480929
95	한창석(韓昌碩)	북제주군 제주읍 외도	징역10월	19480709	19480929
96	문창현(文昌鉉)	북제주군 제주읍 삼도	징역8월	19480713	19481214
97	강희진(姜熙珍)	북제주군 애월면 장전	징역1년	19480722	19490309
98	강순교(姜淳校)	북제주군 애월면 장전	징역10월	19480722	19490203
99	강한방(姜翰邦)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	징역8월	19480728	19481230
100	강순흥(姜淳興)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	징역6월	19480728	19480929
101	문성순(文成淳)	북제주군 제주읍 삼도	징역8월	19480730	19480929
102	이봉기(李奉基)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1년	19480730	19490318
103	고창희(高昌희)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1년	19480730	19490318
104	한양섭(韓良燮)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1년	19480730	19490318
105	이명정(李明正)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8월	19480730	19490103
106	신유행(愼有行)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1년	19480730	19490319
107	양두옥(梁斗玉)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8월	19480730	19490103
108	한명섭(韓明燮)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8월	19480730	19490103
109	양태옥(梁太玉)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1년	19480730	19490313
110	김진호(金鎭祜)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8월	19480730	19490104
111	한원섭(韓元燮)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8월	19480730	19490103
112	김인옥(金仁玉)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	징역1년	19480730	19481208
113	김좌길(金佐吉)	북제주군 제주읍 삼도	징역3년	19480801	19481022
114	부창흠(夫昌欽)	북제주군 애월면 어음	징역8월	19480801	19490113
115	안상숙(安上淑)	북제주군 애월면 어음	징역8월	19480801	19490516
116	박중원(朴重元)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	징역10월	19480824	19490304
117	김홍집(金洪集)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징역10월	19480903	19480929
118	이운경(李雲景)	북제주군 한림면 청수	징역10월	1948??	19480929
119	조훈환(曺勳煥)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징역8월	19490222	19490912
120	고군익(高君益)	북제주군 제주읍 용담	징역8월	19490222	19490912
121	고승호(高承豪)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금고2년6월	19490308	19490827
122	현봉하(玄鳳河)	북제주군 제주읍 이도	징역1년	19490308	19490903
123	현태언(玄泰彦)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	금고2년	19490316	19490609
124	강지주(康之柱)	북제주군 구좌면 동복	징역10월		19480929
125	김은환(金誾喚)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	징역10월		19480929
126	오태봉(吳泰奉)	북제주군 애월면 상귀	징역1년		19480604

<표 1-2> 형집행정지로 인한 출소자(군법회의, 1949. 1~1949. 9)

번 호	성명	본적지	판결	언도일자	출소일
1	현인권(玄仁權)	남군 남원면	무기	19481211	19490702
2	최봉우(崔鳳禹)	북군 애월면	무기	19481215	19490729
3	강일범(康鎰範)	북군 제주읍	징역 1년	19481203	19490704
4	강창규(康昌奎)	북군 제주읍	징역 1년	19481228	19490702

3) 탈옥사건과 탈옥자의 행방

목포형무소에서는 1949년 9월 14일 오후 5시 재소자 400여 명이 형무소 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한 채 탈옥하였다. 이 사건의 발발과 경과에 대해서 육군본부보도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건 당일인 14일 하오 5시경 작업을 마친 죄수 20여 명에게 저녁을 먹이고 간수들은 휴대하였던 무기를 무기고에 넣고 죄수들을 각 감방에 입방시키려 할 즈음 돌연 요란스러운 함성이 일어나자 뒤뜰에서 식사 중이던 죄수 200명도 이에 호응하여 부근 공장에 있던 철봉·망치·곤봉·죽봉 등을 휘두르며 약 40m 떨어진 戒護課로 난입하여 대항하는 간수를 타살하고 무기고를 파괴한 다음 소총 19정(2정은 고장)과 실탄 300발을 탈취하는 한편 수개 감방을 파괴하여 북문으로 탈주한 것이라 한다. 조사당국자는 이 사건이 돌발적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음모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부에서 연락한 혐의도 농후하다고한다. 한편 목포 시내는 아무런 피해도 없으며 務安에 이르는 일대를 철통 같이 경비하고 있으며 야간통행금지는 하오 8시부터 翌朝 6시까지로 되었다.20)

사건이 발발하자 곧바로 목포군·경(호국군도 포함), 해군헌병대 그리고 소방대·대한청년단·목포철도경찰 등이 동원되었다. 해군경비 부사령관 鄭兢謨 중령과 제3특무경비대 사령관 柳海巨 중령, 목포경찰서장 金聲福 등의 합동 지휘로 목포시 내외에 걸쳐 삼엄한 비상경계망을 펼쳐서 9월 14일 당일 하오 10시 현재 탈옥수 80명을 사살 또는 체포하였다. 또한 목포형무소장 한기만은 당일 하오 7시경 형무소는 질서를 회복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죄수 탈옥 당시 5명의 형무관이 순직하고 10명의 형무관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날인 9월 15일 제5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목포에 왔으며, 육군 제20연대의 파견 원조를 받고 육해군·경이 총동원되어 포위망을 펴서 務安 방면으로 도주한 탈옥수들을 체포하였다. 한편 목포경찰서에 본부를 둔「탈옥죄수 수사작전본부」에서는 제5사단장, 목포해군경비 부사령관, 전남경찰국장 명의로 일반 지방민에게 포고문을 발표하여, 목포 근해 선박 항행을 봉쇄함과 동시에 탈옥죄수의 체포에 협력할 것, 그리고 은닉·도피 협력자에게 엄중 처벌할 것,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단축할 것, 지방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등을 엄중히 포고하였다.21)

9월 15일 오전 2시경 함평경찰서 송광섭 경사가 인솔한 형사대와 윤상수 경사가 인솔한 유격대가 무안군 청계면에서 탈옥사건 주동자인 서기오를 체포하였다.22) 9

^{20) 『}朝鮮日報』, 1949년 9월 20일.

²¹⁾ Joint Weeka, No. 14, September 9-16, 1949; 『京郷新聞』, 1949년 9월 16일; 『서울신문』, 1949년 9월 17일.

^{22) 『}湖南新聞』, 1949년 9월 20일,

월 17일에는 목포시내에 비상경계령을 내려서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 군·경, 청년단 등 합동을 약 6,000명을 동원하여 시내 가가호호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탈옥수를 검거 사살하였으며, 탈옥사건 주모자인 김두주(징역 20년 수형인)를 체포하였다.23)

9월 23일 그동안 실시했던 선박 봉쇄, 야간 통행시간 단축 등을 해제하고 해군사 령관, 해군 제3정대 사령관, 목포경찰서장 공동 명의로 아래와 같이 포고문을 발표 하였다.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극소수의 도주자를 남기고 대부분 사살 또는 체포하여 사태는 완전히 수습되었다. 일반시민은 관을 신뢰·안심하고 생업에 精勵하는 동 시 좌기 각항을 명념 유감없기를 기할지며 군경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를 요망 하는 바이다.

- 1. 목포근해 선박 항행금지는 此를 해제한다.
- 2.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 3. 좌의 각항의 1에 해당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 (1) 자동차 운전수, 선박의 장 된 자로서 탈옥죄수 또는 탈옥수로 추측되는 거동 수상자를 승차·승선시킨 자
 - (2) 탈옥죄수 및 거동수상자를 은닉하거나 편리를 도모·공여하여 도주를 용이 케 한 자
 - (3) 탈옥죄수의 은피행방 또는 잠복처를 知悉하면서 此를 군경기관에 신고하 지 않은 자
 - (4)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민심을 感亂케 한 자
 - (5) 생필물자를 매장·매석 또는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자
 - (6) 기타 치안확보상 필요한 군경의 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자
- 4. 右記 사항은 1949년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此를 시행한다.24)

이로써 열흘간에 걸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완전 진압되었다. 탈옥사건을 직접 조사한 법무부 형정국장 윤용섭은 9월 19일 사건의 중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 지로 요약 발표하였다.

- 1. 공장을 감방으로 대용하여 무리한 수용을 하였다는 것.
- 2. 當 형무소에서는 악질 장기수를 원칙적으로 수용치 않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들을 수용하였다는 것.
- 3. 군인 출신의 공비 죄수를 다수 수용하였다는 것.
- 4. 당 형무소 직원에는 좌익에 가담한 자가 잠재하여 사건 발생을 豫知하고 있으면서도 상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묵살하였다는 것.

^{23) 『}東亞日報』, 1949년 9월 19일.

^{24) 『}京鄉新聞』. 1949년 9월 29일.

- 5. 당 형무소에는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飛禽島 신축작업 현장으로 동 직원을 배치하였었기 때문에 평시 직원으로 이를 대치하였다는 것.
- 6. 戒護課 사무실은 감방과 거리가 가까워서 무방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 또한 본 사건 돌발 당시 직원들의 취한 태도는 용감무쌍하고 충실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시 진압시키지 못한 것은 무기가 부족하였을 뿐더러소유 무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 원인이라 하겠다. 한편 방금 직원 중의 불순분자 30여 명을 검거하여 엄중 문초 중에 있는데 그 중에는 본 사건 가담에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자도 있으며 또한 혐의자로 지목될 만한 자도 있다.

군경합동사령부가 9월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수용인원 수는 1,421명이었는데, 탈옥 폭동에 참가한 죄수는 1,000명이었는 바 그 후 군경합동 공격으로 500명은 즉시 진압되고 353명이 완전히 탈옥하였다."고 하였다.25) 당시 국내신문과 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성에 보낸 자료에는 "대부분의 탈옥자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으로 복역 중에 있던 정치범들"이라고 하였다.26) 권승렬 법무부장관 또한 "주동자는 대개 제주도 반란사건에 참가했던 장기수이다."라고 취재기자단에게 밝혔다.27)

사건이 진압된 후 국무회의에서 법부무장관이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9월 19일 현재 자수 3명, 사살 286명(옥외 도망자 228명, 옥내 도망자 58명), 체포 85명, 미체포 37명이다. 형무관 중에는 6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28) 결국 9월 23일 목포경찰서에서 발표한 최종 집계에 따르면, 탈옥 죄수 413명 중 체포 85명, 사살 298명, 자수자 10명, 미체포 23명, 총기 회수 10정으로 파악되었다.29)

목포형무소에는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120여 명, 두 차례 군법회의를 거친 재소자 466명 등 총 600여 명의 제주출신 재소자가 있었다.30) 이들 가운데 탈옥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의 수는 정확한 집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 국가기록원과 목포교도소에 소장 중인 『목포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와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에 사건 당일 출소한 제주출신 재소자를 확인하여 보면, 총수는 52명에 달한다. 이들은 탈옥 후 사살된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로 추정된다.

^{25) 『}漢城日報』, 1949년 9월 17일.

^{26) 『}京鄉新聞』;『東亞日報』, 1949년 9월 16일; Intelligence Summary, No.2573, September 25, 1949, GHQ, Far East Command,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reel 657, MacArthur Memorial Library, U.S.A.

^{27) 『}漢城日報』, 1949년 09월 22일.

^{28) 「}제84회 국무회의록」, 1949년 9월 20일.

^{29) 『}湖南新聞』, 1949년 9월 24일.

³⁰⁾ 위의 『국회속기록』에도 "제주도에서 약 600명 가량의 반란군의 죄수가 와있었다. 그런데 그 죄수는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목포형무소에 두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음모를 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표 2-1> 탈옥수 명단(일반재판)

번 호	성명	주거	형량	판결일	비고
1	송기현(宋基玄)	남제주군 성산면 성산	징역3년	19480603	
2	윤세권(尹世權)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	징역3년	19480730	
3	송순필(宋順弼)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	징역2년	19480728	
4	부동원(夫東元)	북제주군 제주읍 일도	징역15년	19480720	
5	홍숙(洪淑)	남제주군 서귀면 토평	금고1년6월	19490308	
6	김경욱(金景旭)	북제주군 제주읍 용담	금고3년	19490312	
7	김천석(金天錫)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금고4년	19490312	
8	현봉집(玄鳳集)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	금고2년6월	19490314	
9	고한수(高漢洙)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금고2년6월	19490314	
10	김경종(金京鍾)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금고3년	19480314	
11	안창규(安昌奎)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	금고3년6월	19490324	
12	김두창(金斗昌)	북제주군 제주읍 오라	징역1년6월	19490328	
13	송대성(宋大成)	북제주군 제주읍 이도	징역10월	19490321	
14	김학봉(金鶴鳳)	북제주군 제주읍 회천	징역2년	19490627	
15	임재옥(林在玉)	북제주군 제주읍 용담	징역3년	19490627	
16	양치수(梁致洙)	북제주군 애월면 신엄	금고5년	19490719	
17	고인성(高仁性)	북제주군 한림면 명월	징역3년	19490718	
18	김월성(金月城)	북제주군 제주읍 노형	징역1년6월	19490718	
19	채수삼(蔡秀三)	북제주군 제주읍 도련	금고2년	19490727	
20	오동식(吳東植)	남제주군 중문면 하원	징역2년/집	19491025	
21	강인현(康仁鉉)	서울시 중구 대평로1	징역1년6월	19491103	
22	오성창(吳聖昌)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3년	19480607	
23	고한성(高漢成)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	징역2년	19490430	
24	김희관(金希官)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	징역2년		
25	문경생(文庚生)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	징역2년		
26	홍중석(洪重錫)	북제주군 애월면 하귀	징역3년		

<표 2-2> 탈옥수 명단(군법회의)

번 호	성명	본적지	판결	언도일	비고
1	이창휴(李昌休)	제주읍 삼도리	무기	19481203	
2	김기전(金基全)	애월면 하귀리	무기	19481209	
3	홍진표(洪眞杓)	조천면 신촌리	무기	19481210	
4	정근우(鄭根友)	서귀면 하효리	무기	19481210	
5	이시전(李時筌)	애월면 금덕리	무기	19481210	
6	강성수(姜成洙)	제주읍 이도리	무기	19481211	
7	박세원(朴世元)	제주읍 용담리	무기	19481211	
8	문원봉(文元鳳)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81211	
9	김용선(金容善)	애월면 하귀리	무기	19481211	
10	강승국(康承國)	제주읍	무기	19481211	
11	이홍진(李洪鎭)	진도군 내면	징역 5년	19481209	
12	백일현(白日現)	조천면 와산리	징역 1년	19481226	
13	김세민(金世敏)	조천면 조천리	징역 1년	19481228	
14	김우영(金祐瑛)	조천면 조천리	징역 1년	19481228	
15	고영규(高榮圭)	대정면 하모리	징역 7년	19490705	
16	현만옥(玄萬玉)	안덕면 서광리	징역 7년	19490705	

17	문응선(文應善)	애월면 어도리	징역 7년	19490705	
18	고창오(高昌五)	구좌면 하도리	징역 7년	19490705	
19	윤덕빈(尹德彬)	중문면 강정리	징역 7년	19490705	
20	강보윤(姜保允)	애월면 어도리	징역 7년	19490705	
21	오승구(吳承球)	한림면 명월리	징역 7년	19490705	
22	김상보(金相輔)	서귀면 서홍리	징역 7년	19490705	
23	강택추(姜澤樞)	제주읍 월평리	징역 7년	19490706	
24	오면수(吳免壽)	남원면 한남리	징역 7년	19490706	
25	이창수(李昌洙)	애월면 광령리	징역 7년	19490706	
26	문시화(文時華)	남군 대정면	징역 7년	19490706	

※ 문시화 :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다시 재판 받음

『광주지검 수형인명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950년 1월 30일 재판 받은 것으로 나옴.

(본명 문시화, 나이 30, 직업 무직, 주거·본적 대정면 일과리 1721, 죄명 도주, 형기 징역4월, 처형도수 2도, 판결일자 1950.1.30, 판결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 ※ 유가족들이 신고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관련자의 사망 경위 (4·3위원회 신고서)
 - 김두창 : 4·3사건 당시 오라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연행된 이유를 알지 못함) 재판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됨. 그 후 1950년 형이 만기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으나 6·25가 발발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음.
 - → 1949년 탈옥사건으로 사망했으나, 유가족들은 6·25 때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채수삼 : 1948년 4·3사건 당시 도련1동 1677번지에 거주했으며 그 해 삼양지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으며 그 후 5개월 후 산지 공회당으로 잡혀갔다고 함. 그 후 목포형무소로 수감되었다고 함. 1950년 6·25동란이 터지면서 목포형무소 문을 열었다고 함. 그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
 - → 1949년 탈옥을 6·25 때 탈옥으로 잘못 알고 있음
 - 강성수 : 당시 희생자는 큰형인 강성언이 경영하는 제주인쇄공업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중 갑자기 찾아온 경찰과 군인 4~5명에게 연행되어 가서 조사를 받다가 일자미상 경 10~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목포교도소로 이송되어 죄 없이 수감생활을 하다가 1950년(혹은 1949년) 9월 16일 목포교도소에서 사망한 후 당시 전라남도 무안군 석견리(혹은 석현리) 공동묘지에 매장된 사실을 당시 큰형이던 강성언이동생의 사체라도 찾아야겠다는 집념과 노력으로 1952년경 희생자가 사 (이하 불명: 확인 필요)
 - → 1949년 9월 16일 사망 일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매장지 위치를 알고 있음
 - 양계철 :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양계철은 40살 되던 해 1949년 6월 목포형무

소 수감 중 <u>탈옥사건(?)</u>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음

대부분의 신고자(유가족)들은 1949년 탈옥사건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탈옥사건이라고 전해들은 사람들도 1950년 6·25 때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 다.

- ※ 탈옥사건 당시 목포형무소 재소 중이었던 생존자의 증언
- 부영성(夫英性, 2000년 84세, 1917년생, 20001215)

목포형무소에 들어가서 아침 중간, 뜰에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보니까 제주도에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200~300명 됐을 거다. 1년형은 그 당시 제주시에 있는 사람 둘하고 나하고 셋 정도고, 그 나머지는 15년, 10년, 7년, 8년. 그때서야형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방생활을 하는데 얼마 없으니까 1459번이라고, 그게 군번인데 1459번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형무소 중앙에 30평, 50평되는데 이름 부르고 1459하고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다 호명해서 끝나니까식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다 일하더라.

종달리 부옥만씨라고 7년형(4년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종달리 사건으로 해서 부옥만씨가 식당 잡역을 하고 있었다. 작업소에서 우두머리하고 감방도 돌아다닐 수 있고 형무소 안은 필요하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부영성해서 있으니까 "부영성씨가 누구요?" 하는 거라. "접니다" "아그래요.?" 그 이상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룽밥도 갖다주면 우리끼리 갈라먹기도 하고 또 일할 때 되니까 모자 장갑 이걸 돌려줬다.

(1949년 9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석산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밥을 먹는데, 저녁시간은 대개 다섯시인데, 그 밥을 다 먹고 나서니까 와 하고 총소리가 나는 거라. 보니까 목포시청에 이북군이 점령했다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라. 바깥에서는 야단들이고 우리 있는 데는 간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꼼짝말고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다 있었다.

그 날 저녁 우리들은 머리를 숙여서 이제는 감방으로 다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밤중도 되기 전에 야단이야. 바깥에서는 왕대 1미터 더 된 것으로 막 두드려 패니까 죽는다 산다 막 야단들이야.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건가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그 날 저녁 넘기고 또 뒷날까지 넘겼다. 그래서 우린 무사했다. 제주도의 저기는 죄 없는 놈도 잡아가서 막 두드려 패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걸 아주 잘 지키는 간수들이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두드려 패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넘었죠.

그때 목포형무소에는 가보니까 여수반란사건이 있던가 거기서 간 사람하고 제주

도에서 간 사람들이 주로 주동했을 거다. 탈옥 사건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

(제주도 사람이 많이 탈옥사건에 가담했다고 하던데?) 많이 가담했다.

○ 송석진(2001년 75세, 1926년생, 20011112)

여름이었다.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총소리가 나고 야단이 났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이 있어서 간수들이 죽었 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중에 보 니까, 사람들이 반도 없었다. 탈옥과정에서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다. 선동자와 함 께 붙어나가다 죽었다. 거의 다 제주도 사람들이다. 육지사람도 있었다. 내가 일본 에서 만난 사람을 거기서 만나기도 했다. 전라도 전주출신인데, 그애들도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주동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목포형무소에서 한 6개월 있다 가, 석산에서 돌깨는 일을 했다.

부성탁이라고 같이 한 방에 있었다. 나보다 한 며칠 늦게 나왔을 것이다. 이후 만난 적은 없다.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 같았다. 도청인가어디 관에서 측량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구좌읍 세화리 사람으로 명단에 이름이 있다.

우리는 제주출신끼리 모아놓았다. 몇 개월 후에야 감방에 들여놓는데, 잡범이라고 불리는 강도, 살인범들하고 같이 있었다. 우리는 그 잡범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목 포형무소 탈옥사건이 있은 후,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서 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이후, 죄를 조사했다. 탈옥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제주도 출신들을 무조건 잡아다 죽였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는, 잡범들이 내 보증을서 줬다. 틀림없이 자신들과 같이 있었다고, 탈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증을 서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 안두원(2002년 75세, 1928년생, 20020402)

그때 한 2년 이상은 형무소 안에서 하던 일을 했는데 우리는 바깥에 한 30명 가량이 간수들이 아침에 한 6km정도 나간 산에 가서 석공 일을 석산(?).... 연장은 형무소에 있는데 갈 때는 모두 져서 가지고 돌도 깨고 5시 되면 들어와서 바깥에 문두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밖에서 '부모형제가 기다리니까 나가자~!!' 밥 먹다가 그런 말 하니까 어리둥절해서 밥도 못 먹고. 보초 서는데 '나가자~!!' 해서 문들도 잠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서 열게끔 되어서 나가니까 총을 팡팡 놓으니까 안에서는 80명씩 조별로 인솔하는 간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가자 하니까 식사하

다가 와와와 할 거 아니냐 간수들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해서 움직인다고 하니까…무서웠다. 당시 나는 어려서 어느 정도로 조직화되었는지 모르겠다. 산이 있는데 죄수복 입고…우리도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서 집 근처에돌집에 있어서 거기 박아져 있으니까…나가려도 해도.

(질문자): 돌집은 형무소 안인가 밖인가?

안에. 한 10분 있으니까 헌병 순경들이 들어와서 '손들어'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들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못나가고 있으니까 헌병들이 와서 손들어 하니까 손들고 보니까 몇 명 없었다. 다 나가고. 8명인가 10명인가? 한 8명 정도.

해남 사람도 있고 완도사람들이 거기 와있었다. 제주 사람은 별로 없고 제주 사람은 내가 제일 형을 작게 받았는지 잘 볼 수 없다. 제주 사람도 동네 사람 아니면 얼굴 모르니 전혀 모른다. 성산포니 각처에서 들어오니 임시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알 수 있는 정도 모른다. 거기서 있다가 손들라고 해서 모두 손들고 감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그 날은 조용했다. 뒷날은 한사람 씩 불러서 누가 이런 말을들었냐 언제 들었냐 질문하기에 난 들은 바도 없고. 내 생각엔 안에서 한 조직이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통지가 없었다. 갑자기 그런 것이고 나에게 통지가 있었으면 나왔을 것이다. 상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방에들어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 불러서 하고. 거기서 가담했던 사람들은 죄를 들어줬다 해서 그랬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잡혔다 말을 하고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거기서 있다가 정기적으로 2월 달에서 10월 달에….

많이 탈옥했다고 들었다. 거의 제주사람이다. 내가 산 감방엔 제주 사람이 별로 없고 해남 완도 장흥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제주말 하니까 제주사람이라고 거 기서도 그랬다. 완도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오태익(吳泰益, 2000년 76세, 1925년생, 20001215)

음력으로 6월 말일 경에 형무소 운동장에서 점심을 먹다가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고, 창고 문을 유리조각 부숴서 그 틈으로 아무래도 약 50명정도 들어갔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우리 형무소에 있던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문 열어버리고, 총기 난사하고 한 거였다. 문 열어버리니까 도망갈 놈은 도망가고 도망간 놈은 나중에 잡혀왔다.

난 도망가지도 않고, 내가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 유리 부수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는 거기서 밥 먹었던 그릇을 가져다가 유리를 깬 거라. 그 유리 하나 부숴서 들어가니까 빡빡했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안에서 잡아주고 해서 들어간사람이 약 50명 되는 거였다. 도망간 게 아니고, 도망을 안 가려고 한 사람이 거기를 들어간 거였다. 그 사람들은 성적이 좋다고 한 거였다. 거기서는 다 1년형 받은

사람이었다. 거기서 도망친 놈들은 강도,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받은 사람이었다. 강도사건 받은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는 간수한테 가서 이런 사람들과 안 있겠다고하면, 다른 감옥으로 이송시켜 주마, 그래서 그 당시 또다시 창고로 와서 생활하다가 며칠날 석방된 거는 모르고, 돌아와 보니까 음력 8월 20날 집에 오게 되었다.

○ 진용성(秦庸成, 2000년 83세, 1919년생, 20001216)

식사를 조금 하려고 하니까, 그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아래서 총소리가 콩 볶는 듯했다. 간수들이 2층에 모두 올라와서, 너희들 가만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병원 안에서 이불 덮고 반창 아래 숨었다. 아마도 한 시간은 콩 볶아가듯 했다. 그래서 나가보니, 우리 양어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이 고되니까, 그런 생각을 않고, 그 안에서 장기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마 그 폭동을 일으킨 거였다. 거의 탈옥했는데, 전부 잡혔다고 했다.

형무소 안에서 한 달쯤은 꼼짝도 못했다. 외역도 딱 금지해버렸다. 우리 제주도 사람도 밥 먹으러 갈 때는 말은 못해도 대할 수가 있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제주읍에 양성두라는 사람이 형을 많이 받고 갔다. 그 사람이 그 사건 나기 전에는 밥 먹으러 다닐 때 보였었는데, 사건 후에는 못 보았다. 양성두는 그때에 사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성 살다가 제주읍에 간 사람이 양계천이라고, 그 사람은 형을 4년 받았다고 했는데, 석산이라고 한 곳을 다녔다. 돌 부수는 데. 거길 다녔는데, 그 사람도 못 보았다. 와서 보니까 그 사람도 거기서 죽고.

목포 사건 날 때에 간수들이 그 영내에서 많이 죽었다. 총 맞아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 어디 가서 누가 죽고. 그 간수들이 그 총알을 피하려고 2층 병원으로 올라왔다. 2층 병원에 와서 너희들도 이제 총알 맞고 죽는다고. 우린 총소리가 콩볶듯 하니까, 우린 이불 둘러써서 반창 아래 숨었다.

4. 한국전쟁 직후 재소자의 행방

1) 탈옥사건 이후로부터 전쟁 이전까지 출소자 실태

<표 3-1> 만기·감형으로 인한 출소자(일반재판, 1949. 10~1950. 6)

번 호	성명	주거	형량	판결일	출소일
1	임덕수(任德洙)	북제주군 제주읍 도평	징역2년	19480713	19491009
2	최운길(崔雲吉)	북제주군 제주읍 도평	징역2년	19480713	19491009
3	고영경(高英璟)	북제주군 제주읍 내도	징역3년	19480727	19500530
4	문인화(文仁華)	북제주군 제주읍 연동	징역2년	19480728	19491025
5	송영봉(宋永鳳)	남제주군 대정면 무릉	금고1년6월	19490308	19500606
6	박기출(朴己出)	북제주군 애월면 장전	금고2년	19490308	19491230
7	현봉하(玄鳳河)	북제주군 제주읍 이도	징역1년	19490308	19490903
8	박두반(朴斗班)	북제주군 제주읍 도두	금고1년6월	19490314	19500611
9	오창운(吳昌雲)	북제주군 제주읍 도두	징역1년6월	19490314	19500611
10	강윤화(姜允化)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	징역1년	19490627	19500428
11	강원선(姜元仙)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	징역1년	19490627	19500428
12	오남곤(吳南崑)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	징역1년	19490727	19500528
13	양기환(梁基煥)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	징역2년6월	19490817	19500520
14	양인하(梁仁廈)	북제주군 한림면 수원	금고2년	19490906	19500119
15	황승휴(黃承休)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	징역2년	19491220	19500308
16	김두병(金斗炳)	북제주군 제주읍 용담	징역5년	19500522	19500714
17	김두황(金斗璜)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	징역1년		19500210

<표 1-2> 만기·감형으로 인한 출소자(군법회의, 1949. 10~1950. 6)

번 호	성명	본적지	판결	언도일자	출소일
1	윤태윤(尹泰允)	북군 제주읍 내도	징역 1년	19481204	19491005
2	김치영(金致榮)	북군 애월면 소길	징역 1년	19481204	19491005
3	양익부(梁益符)	북군 제주읍 봉개	징역 1년	19481207	19491008
4	김귀아(金龜兒)	북군 제주읍 오등	징역 1년	19481207	19491008
5	양병섭(梁炳燮)	북군 제주읍 봉개	징역 1년	19481208	19491009
6	허림(許琳)	북군 제주읍 오라	징역 1년	19481208	19491009
7	김학수(金學洙)	북군 제주읍 아라	징역 1년	19481208	19491009
8	부성택(夫聖澤)	북군 구좌면 세화	징역 1년	19481208	19491009
9	강반삼(康班三)	북군 조천면 함덕	징역 1년	19481208	19491009
10	강달평(姜達平)	북군 애월면 장전	징역 1년	19481208	19491208
11	송석진(宋錫珍)	북군 한림면 협재	징역 1년	19481209	19491010
12	고문익(高文翊)	북군 제주읍 건입	징역 1년	19481209	19491010
13	강재철(姜在哲)	북군 애월면 하귀	징역 1년	19481209	19491010
14	송윤옥(宋允玉)	남군 대정면 영락	징역 1년	19481209	19491010
15	이상호(李尙琥)	북군 제주읍 이도	징역 1년	19481209	19491010
16	강남주(康南周)	남군 중문면 도순	징역 1년	19481210	19491011
17	오용남(吳容南)	남군 서귀면 동홍	징역 1년	19481210	19491011
18	김석삼(金錫三)	남군 서귀면 서홍	징역 1년	19481212	19491013
19	한형용(韓亨鏞)	남군 서귀면 보목	징역 1년	19481212	19491013
20	전인하(田仁夏)	북군 제주읍 아라	징역 1년	19481212	19491013

번 호	성명	본적지	판결	언도일자	출소일
21	강재수(姜載洙)	남군 서귀면 법환	징역 1년	19481212	19491013
22	한만년(韓万年)	남군 대정면 상모	징역 1년	19481212	19491013
23	임헌수(任憲壽)	북군 애월면 하귀	징역 1년	19481213	19491014
24	오태희(吳泰熙)	남군 서귀면 동홍	징역 1년	19481213	19491014
25	오태익(吳泰益)	남군 서귀면 동홍	징역 1년	19481213	19491013
26	양영하(梁永河)	북군 제주읍 용담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27	이창현(李昌鉉)	북군 제주읍 용담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28	부영성(夫英性)	북군 구좌면 하도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29	안두원(安斗元)	북군 애월면 하귀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30	김군산(金君山)	전남 고흥군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31	김승연(金承連)	북군 제주읍 이호1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32	양우수(梁우壽)	북군 제주읍 이호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33	정만종(鄭萬宗)	북군 제주읍 도두	징역 1년	19481215	19491016
34	김순선(金淳善)	북군 제주읍 영평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35	김태경(金泰景)	북군 제주읍 삼도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36	이신여(李信汝)	북군 제주읍 일도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37	김여화(金麗化)	북군 제주읍 이호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38	강기룡(姜己龍)	북군 제주읍 아라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39	김봉추(金鳳秋)	북군 제주읍 아라1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0	박계협(朴桂浹)	북군 제주읍 용담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1	강세영(康世榮)	남군 중문면 강정	징역 5년	19481226	19491028
42	정병구(鄭柄球)	북군 제주읍 오등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3	문석도(文碩度)	북군 제주읍 도두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4	윤군일(尹君一)	북군 제주읍 도두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5	송두경(宋斗景)	북군 제주읍 도두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6	임창빈(任昌彬)	북군 제주읍 도두1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7	양철호(梁哲鎬)	북군 제주읍 화북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8	김현범(金鉉範)	북군 제주읍 도두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49	양을윤(梁乙允)	남군 남원면 신례	징역 1년	19481226	19491126
50	김현수(金鉉洙)	북군 제주읍 화북	징역 1년	19481226	19491027
51	강천종(康千宗)	북군 제주읍 오라	징역 1년	19481227	19491028
52	김정익(金正益)	북군 제주읍 이호	징역 1년	19481227	19491028
53	양재숙(梁在淑)	남군 남원면 신례	징역 1년	19481227	19491028
54	신추정(愼秋訂)	북군 구좌면 김녕	징역 1년	19481227	19491028
55	조여향(趙汝郷)	북군 애월면 금성	징역 1년	19481227	19491028
56	양정숙(梁正淑)	남군 남원면 신례	징역 1년 기억 1년	19481227	19491028
57	김인하(金仁河) 소오천(宋도상)	북군 제주읍 이호	징역 1년 지역 1년	19481227	19491028
58	송옥현(宋玉鉉)	북군 애월면 금성	징역 1년 징역 1년	19481227	19491028
59	김세종(金世宗)	북군 제주읍 오라		19481227	19491028
60	조기홍(趙基弘) 김희철(金禧哲)	북군 제주읍 내도 남군 대정면 모슬	징역 1년 징역 1년	19481227 19481228	19491028 19491029
62	의 절(並幅百) 이 완형(李完珩)	북군 제주읍 삼도	정역 1년 징역 1년	19481228	19491029
63	윤동혁(尹東赫)	북군 제주읍 삼도	정역 1년 징역 1년	19481228	19491029
64	김병화(金秉化)	북군 조천면 대흘	정역 1년 징역 1년	19481228	19491029
65	이원삼(李源三)	북군 조천면 조천	징역 1년	19481228	19491029
66	이태민(李泰敏)	북군 조천면 조천	징역 1년	19481228	19491029
67	ユ기 (高基則)	북군 조천면 와흘	징역 1년	19481228	19491028
68	김성원(金成元)	남군 대정면 신평	징역 7년	19490705	19491103
69	홍인봉(洪仁鳳)	남군 남원면 남원	징역 7년	19490705	19491010
70	장황환(張昌煥)	북군 한림면 한림	징역 7년	19490706	19490928
71	임석진(林碩珍)	남군 대정면 하모	징역 7년	19490706	19491112
72	문시화(文時華)	남군 대정면 일과	징역 7년	19490706	
		, , , , , , , , , , , , , , , , , , , ,			1

- ※ 우량자석방령에 의해 석방된 사람
 - 임덕수/최운길: 1년 6월로 감형, 49.10.9 출소(우량자석방령에 의한 석방)
 - →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754)
 - 문인화 : 49.10.25 출소(우량자석방령에 의거)
 - →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579)

※ 목포형무소에서 병으로 옥사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유가족의 기억 (4·3위원회 신고서)

- 김성원 : 1949년 11월 3일 출소한 것으로 기재됨. 아들(김대수)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함.
- 홍인봉 : 1949년 10월 10일 출소한 것으로 기재됨. 위원회 신고서에는 1949년 10월 8일 목포형무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됨.
- 문성환: 1948년 10월 30일경 농사일을 하던 중 토벌대가 침입하여 주택을 방화한 뒤 뒷문으로 나갔음. 그 후 동네 사람들하고 야산에서 살던 중 토벌대에 잡혀 덕수출장소에 동네사람들하고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음. 그 후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인 걸 알고 할아버지께서 형무소 면회 갔는데, 수감 중에 사망(1950. 4. 8)한 것을 알았음.
- 현명윤 : 4·3사건 희생자 현명윤은 4·3사건 당시 48세 나이로 농업에 종사하며 살다가 1948년 (음) 10월 7일 한남리 가옥이 불타버리자 전 가족이 산으로 피신 중 에 1948년 겨울 토벌대가 현명윤 등이 있는 곳에 급습하여 체포하여 희생자 가족을 전부 서귀포 수용소에서 수감하였다가 나머지 가족은 석방시키고 희생자만 목포형 무소로 후송하여 수감 중 1950년 3월 24일 병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
- 오창오 : 당시 아라동에 거주하던 중 남문통으로 소개하였는데 헌병대에 의해 연행. 목포형무소에 수감. 1950년 4월 16일 형무소에서 사망.
- 양성옥 : 1950년 4월 14일 오후 4시 목포형무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았지만 유해는 인도받지 못함(1949.6.27,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4년형 언도)
- ※ 만기로 형을 마치고 돌아온 뒤 6·25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사례가 많다. (4·3위원회 신고서)
 - 강윤화 : 1948년 5월경 토벌대에 잡혀 애월지서 등지에서 이유 없이 모진 고문

등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이후 목포형무소에서 2년간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1950 년 7월경 6·25전쟁에 따른 군의 예비검속에 4·3사건 당신의 전력을 이유로 다시 검거되어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음.

○ 박두반 : 1950. 6. 23. 목포형무소에서 만기 귀향하였는데, 6·25 저녁 무렵 도두 지서에서 말 좀 물어 보겠다고 데리고 간 것이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되었음.

○ 문석도 : 목포형무소에서 1년형을 마치고 상기 주소에서 귀가, 소실된 집을 재건 하고 있었음. 50년 7월초에 경찰에 잡혀가 행방불명됨. 예비검속에 의한 구속으로 추측됨.

○ 고문익: 제주4·3사건 희생자 고문익은 1922년 3월 17일 제주시 건입동 1342번 지에서 출생하여 제주4·3사건 당시 26세 나이로 처와 자식을 키우며 제주주정공장에 근무 중 밤에 자택에서 경찰관에 의해 연행. 그 후 징역1년형을 받아 목포형무소에서 형을 마치고 1949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전 근무처 주정공장에 복직 근무중,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8월경에 제주시 건입동 1354번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야간에 경찰관에 (의해 끌려가서 행방불명).

○ 박신원 : 예비검속, 총살. 백조일손. 『죽음의 예비검속』 204쪽.

○ 정만종 : 금고1년, 49.10.16 출소(우량자석방령에 의한 석방), 범죄개요 없음 →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명단(768).

무장대 지원 혐의를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석방. 전쟁이 일어나자 예비 검속돼 희생. 수장 당했다고 함 : 조카 정영택의 증언(011227).

2) 형무소 재소자의 이송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일반재판과 군법회의를 거쳐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전국 각 지역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주로 목포·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곧바로 서대문·마포·대전·대구·목포·인천·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마포·대전·인천형무소 재소자는 거의 이동이 없었지만, 다른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무소의 사정과 기타 사유에 따라 다른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8년 군법회의'로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무기징역 24명은 1949년 3월 4일에 대구형무소에 이송되었다.31) 징역 15년형 202명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지 얼마 없어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32) 징역 10년형·5년형 일부는 김천형무소로 이송되었다가 1950년 4월 28일 부천형무소로 옮겨졌다.33) 목포형무소에서

^{31) 『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

^{32) 『1948·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에 대구형무소에 재소 중이라고 적혀 있다.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34) 대구형무소에 있던 10여 명은 1950 년 1월 14일·17일 양일에 걸쳐서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35) 전주형무소 수감자 일부는 형무소가 비좁아져서 1949년 4월 안동형무소로 이감하였다.

'1949년 군법회의'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300명 대부분은 1950년 1월 17일과 20일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36) 전쟁 발발 후 10월 3일에 다시 150여 명이 마산형무소로 옮겨갔다.37)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200여 명의 여성 재소자들은 수감 한 달만에 대부분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38)

일반재판 수형자들은 대부분 목포·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타 형무소로 이송된 예가 많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두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들 가운데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규석과 고윤섭은 광주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3) 한국전쟁 직후 집단 총살 희생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39) 그러나 정부는 서울·인천 등 형무소 재소자에 대해서는 경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남쪽으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군의 남하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 이남지역의 형무소 재소자들은 집단 총살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고, 이 중에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이었다.40) 제주에서 이송된 4·3사건 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41)을 제외한

³³⁾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이 부친 고병호에게 보낸 엽서, 1950. 5. 22(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창간호, 234쪽); 제주읍 도남리 출신 고경옥이 아내 강덕화에게 보낸 엽서, 1950. 6. 18(위의 책, 250쪽).

³⁴⁾ 제주읍 화북리 출신 현귀찬(이명 현성찬)은 목포형무소에서 엽서를 보내다가 뒤에 진주형무소에서 보냈다고 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④, 102쪽). 제주읍 오등리 출신 김병로도 목포형무소에서 진주형무소로 옮겨졌다(『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시 오등동 신고분, 1960).

³⁵⁾ 행형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두선·박중돈·이원화·신재운·김삼현·김치옥·현명하·현보하·박 문옥·이여배·이일만(국가기록원 소장, 『대구형무소 종신형자등기부』;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 『부산형무소 재소자명부』).

^{36)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 『부산형무소 재소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

^{37) 『}마산형무소 수용자신분장』(국가기록원 소장). 국가기록원에는 부산형무소에서 마산형무소로 이송된 134명분 의 수용자신분장이 보관되어 있다.

^{38) 『}서대문형무소 재소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에 이재옥·이정숙·이정생 등의 명단이 확인된다. 허두헌은 전주 형무소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직접 이송 광경을 목격하였다. 許斗憲(72세, 제주시 도남동, 당시 학생, 2000. 12. 13. 채록) 증언.

^{39)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 3. 30. 방영.

⁴⁰⁾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1951(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에서 재인용).

2,350여 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목포형무소에는 4·3 관련 재소자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다. 만기·형집행정지·감형으로 출소한 사람과 1949년 탈옥사건으로 사망한 사람 외에도그 수는 400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의 부족으로 목포형무소에 정확히몇 명이 수감되어 있었고, 전쟁 직후 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면회·서신 왕래·기타 증언 등을 통해 전쟁 당시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임이 분명하다고 밝혀진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한 명도 없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 등에 수감된 4·3 관련 재소자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전쟁 발발 직후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에 재감중인 죄수 및 보도연맹 관계자 기타 피검자는 전국 관계장 경찰국장 형무소장 검사장과 타협 직결 처분하고 절도 기타 잡범은 가출옥 등적당한 방법을 취할 사 각 경찰에 유치중인 피검자도 전기에 의거하여 처치하라.42)

이 명령서는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광주헌병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4·3 관련자들에 대한 사살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3년 이상의 수형자는 6월 27일 밤부터 6월 28일 새벽까지 전주형무소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 굴을 파서 사살시켰다. 광주형무소의 경우 1950년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헌병들이 형무소에 몰려와서 재소자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가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일렬로 세운 채 총살하였다. 총살 장소는 광주시 광산군 극락면 불갱이고개를 비롯하여 광주 교외의 광산군 지사면 장고봉, 석고면 도등고개, 대천면 한톳재, 광주시 학동3구 밀양동고개 등 5군데이다.43)

목포형무소의 경우, 언제 어디서 몇 명을 총살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국가 기록원에 소장 중인 『6·25당시 탈옥수명부』(법무부, 1951)에는 목포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탈옥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재판을 거친 4·3관련자 다수가 등재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이들은 탈옥이 아니라 군에 의해 집단 총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으며, 유가족들 대부분이 6·25 직후 총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41) &#}x27;1948년 군법회의' 대상 가운데 징역 1년형은 목포형무소 90명, 인천형무소 52명, 전주형무소 38명 등 총 180명이었다.

^{42) 『}朝鮮人民報』, 1950년 9월 5일.

⁴³⁾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실태에 대해서는 신경득,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165~186쪽을 참고하였다.

<표 4> 6·25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자 명단

번 호	성명	주거	형량	판결일	비고
1	강상문(姜相文)	애월면 애월	징역2년6월	19490308	, = :
2	양창구(梁昌玖)	제주읍 오라	금고2년6월	19490312	
3	현기홍(玄基弘)	조천면 신촌	징역2년6월	19490314	
4	김신하(金信河)	제주읍 이호	금고3년	19490316	
5	양계철(梁桂澈)	제주읍 이호	금고3년	19490316	
6	오태효(吳泰孝)	제주읍 수산	금고2년6월	19490324	
7	부재홍(夫在弘)	제주읍 이도	금고3년	19490321	
8	우정생(禹丁生)	제주읍 화북	징역3년6월	19490331	
9	양귀하(梁貴河)	애월면 애월	징역3년6월	19490331	
10	양군실(梁君實)	제주읍 화북	징역2년6월	19490411	
11	김창운(金昌雲)	조천면 신촌	징역2년	19490602	
12	김대운(金大云)	제주읍 화북	금고2년	19490617	
13	정경봉(鄭庚鳳)	한림면 명월	징역7년	19490711	
14	김상욱(金商旭)	제주읍 이호	징역7년	19490711	
15	김순보(金順保)	제주읍 노형	징역7년	19490711	
16	오중효(吳仲孝)	한림면 한림	징역2년	19490718	
17	김세우(金世雨)	제주읍 오등	징역2년	19490718	
18	김희부(金熙富)	제주읍 이호	징역2년	19490711	
19	오재규(吳在奎)	안덕면 상창	징역2년	19490720	
20	김봉주(金奉柱)	제주읍 이호	징역3년	19490725	
21	이경원(李京元)	서귀면 서귀	징역2년	19490830	
22	이영찬(李永燦)	제주읍 도남	징역4년	19490830	
23	황덕칠(黃德七)	대정면 무릉	징역4년	19490830	
24	황희겸(黃喜謙)	대정면 무릉	징역2년	19490830	
25	황창만(黃昌滿)	대정면 무릉	징역2년	19490830	
26	김두규(金斗奎)	대정면 무릉	징역3년	19490830	
27	양재하(梁載厦)	한림면 명월	금고2년	19490906	
28	현규호(玄圭浩)	제주읍 노형	징역3년	19490915	
29	이남구(李南九)	제주읍 외도	징역3년	19490915	
30	양항용(梁恒用)	조천면 한덕	징역1년6월	19490915	
31	좌우보(左右寶)	제주읍 용담	금고3년	19490921	
32	강좌호(姜佐鎬)	제주읍 함명	징역2년	19490921	
33	양병기(梁炳基)	제주읍 도련	징역2년	19490923	
34	김종하(金鐘厦)	제주읍 봉개	징역2년	19490930	
35	김길수(金吉洙)	남원면 의귀	징역2년	19491014	
36	김남유(金南裕)	제주읍 삼도	징역3년	19491021	
37	강익수(康翊洙)	제주읍 용담	금고3년	19491021	
38	박남옥(朴南玉)	조천면 조천	금고2년	19491025	
39	고태규(高泰奎)	조천면 대흘	징역2년	19491103	
40	박성택(朴聖宅)	서귀면 서귀	징역2년	19491126	
41	고점철(高點哲)	제주읍 도련	징역7년	19491216	
42	진판덕(陳判德)	제주읍 일도	징역2년	19491223	
43	강학순(姜學順)	중문면 강정	징역7년	19491216	
44	강덕언(姜德彦)	제주읍 노형	징역2년	19500118	
45	김원창(金元昌)	애월면 상귀	징역3년	19500207	
46	マダイ(姜錫圭)	애월면 금덕	징역4년	19500213	
47	コ재군(金在郡)	제주읍 용담	징역5년	19500118	
48	고재현(高在現)	조천면 대흘	징역5년	19500222	

49	고행능(高行能)	제주읍 화북	징역2년	19490419
50	홍종문(洪宗文)	제주읍 삼도	징역1년6월	19500331
51	변기화(邊基化)	안덕면 창천	징역3년6월	19500331
52	현채문(玄彩文)	제주읍 오라	금고3년	19500411
53	김인석(金仁錫)	표선면 가시	징역4년	19500525
54	김윤환(金允煥)	조천면 함덕	징역3년	19500527
55	양군섭(梁君燮)	제주읍 해안	징역5년	19500529
56	오종화(吳宗化)	서귀면 서귀	벌금2천원	19470826
57	김택수(金宅洙)	제주읍 용담	징역8월	19480426
58	이창룡(李昌龍)	전남 영광군	징역5년	19480427
59	이재선(李載善)	전남 함평군	징역5년	19480427
60	김두만(金斗滿)	부산시 남항동	징역1년6월	19491126
61	김영호(金泳昊)	제주읍 용담	징역1년6월	19491205
62	김기식(金基植)	조천면 북촌	징역4년	19500207

※ 6·25 직후 목포형무소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기억 (4·3위원회 신고서)

○ 황창만 : 1949. 6. 1(음) 무릉리 성곽에서 입초를 서다가 4·3사건 연루 혐의로 경찰에 잡혀 목포형무소로 이감 후 6·25사변으로 행방불명됨.

○ 황덕칠 : 1949. 6. 1(음) 마을 성곽에서 입초를 서다가 4·3 연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 이송 수감 중 행방불명됨.

○ 황희겸 : 1949. 6. 1(음) 무릉리 성곽에서 입초를 서다가 4·3 연루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 목포형무소로 이송 수감 중 6·25사변 이후 행불.

○ 오재규 : 4·3희생자 오재규는 당시 30세로서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 청년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1948년 중산간 지역에 소개령이 내려졌으나 5촌 조카 오경수가 산으로 입산하여 나머지는 전부 가족들이 사실되었고 오재규는 자수하여 서귀포 경찰서로 압송되어 갔고 뒤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부모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그 뒤 1950년 6월 이후에는 소식이 끊겨 행불됨.

 \odot 현채문 : 남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50년 초 형을 언도받고 목포형무소에 간 후 $6\cdot 25$ 전쟁 발발과 함께 행방불명임

○ 강동구 : 4·3사건 희생자 강동구는 1925년 12월 11일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219번지에서 출생하여 이계화와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둔 가장으로 부인과 아들은 4·3 당시 사망함. 그로 인해 그 해 가족들은 모두 제주시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이듬해 경찰들이 가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강동구는 빗게 1회를 섰다고 진술해 버림. 그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어 1년형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1950년 6월 24일 가족이 면회를 가서 만났고 다음 (날 행불).

(※ 1949.9.3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형 언도)

○ 양부연 : 희생자 양부연은 1949년 음력 5월 중순경 경찰에 의해 목포형무소로 끌려가 다음해 1950년 음력 7월경에 (일설에 의하면 총살하여 바다에 버렸다고 함) 돌아가셨다고 하며 시체는 찾지 못하였음.

(※ 1949.6.17,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형 언도)

○ 이태신 : 4·3사건 희생자 이태신은 신고인 이정자의 아버지로 1920년 6월 21일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497번지에서 태어나 대정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48년 4·3사건 발생 당시에 사태가 혼란하여 숨어 지내다가 붙잡혀 모슬포 어느형무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다시 목포형무소에 감금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1950년 7월 10일까지 목포 형무소에 있었다고 함) 가족들이 수소문하여 찾으려고 하였지만 이 날 이후 소식을 모른 채 행불되었다.

(※ 1949.10.5,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집행유예3년형 언도)

○ 현첨종(현돈석): 4·3사건 희생자 현돈석은 1884년 4월 20일 제주시 노형리 1202 번지에서 출생하여 가족들과 밭농사를 짓고 생활하다가 1948년 음력 10월 19일 오 후 6시경에 마을 서북쪽 진입로로 9연대 군인이 총성을 울리며 사람들을 닥치는 대 로 총살하고 밤에는 마을 북쪽 가옥만 불을 붙이고 잠복근무를 하던 군인들에게 다 음 날 새벽에 궁금하여 밖에 나간 후 소식이 두절되고 그 후 3년만인 1951년 3월 8 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96번지 소재 목포형(무소 ··· 이하 확인 필요)

(※ 1949.12.30, 제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징역5년형 언도)

※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200여 명의 행방에 대한 유 가족들의 기억 (4·3위원회 신고서)

○ 양영빈: 4·3사건 희생자 양영빈은 1929년 10월 16일 제주시 노형리 2612번지에서 출생하여 4·3사건 당시 20세의 나이로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생활하다가 1949년 6월 25일 아침에 토벌대에 불려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었고 뒷날 경찰이 연행한 후에목포형무소로 수감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 사건이 발생하자 집단 총살을 당하였으며 목포에 있는 7촌 조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함.

○ 강태훈 : 행방불명자 강태훈은 4·3사건 당시 24세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어수선 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산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1949년에 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내려왔는데 여자들은 풀어주고 남자들은 제주시 동척회사(주정공장)에 감금했다가 목포형무소로 이송, 복역 중에 모친이 면회를 한 달 후 석방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6·25동란으로 행방불명됨.

○ 정영수 : 희생자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수감된 죄수들이 집단으로 학살되었다는 상황을 당시 형무소 주변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 확실한 사망 원인은 모르고 있음 ○ 조응천 : 희생자는 일제시대에 정용으로 남양군도에 끌려가 해방을 맞아 제주도로 복귀하였는데 당시 천식을 얻어 고생을 하였는데 4·3사건이 발생하여 구억리 주민들이 소개하여 인성으로 내려갔는데 희생자는 억울하게 폭도로 오인 받아 목포형무소에 잡혀갔다가 6·25가 터지면서 행방불명됨

○ 허균(허대호) : 희생자는 1949년 7월경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12월경에 희생자의 모친이 목포형무소에 면회갔다온 후 6·25가 터지면서 실종되었음. 호적에는 허균으로 되고 부르는 이름은 허대호였음

○ 박창숙(여): 다시 20세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가 1949년 1월경 건입동 소재 주정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포형무소 수감. 1950년 5월 5일 사망.

○ 김경옥 : 희생자 김경옥은 구억리에서 출생하여 살아오다가 4·3사건 당시 29세 때 농사를 짓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폭도로 오인 받아 목포경찰서에서 1950년 6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 강익수 : 희생자 강익수는 1949년 여름 타인의 모략에 의해 연행되어 간 후 목 포형무소에서 소식 왕래가 있다가, 1950년 6·25가 발발하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소 식에 의하면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망하였다고 함.

○ 문재선 : 계엄령이 선포되어 주동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희생자는 마을 청년들과 같이 성담을 쌓고 마을경비를 하던 중 산에 도망간 사람들이 토벌에 의하여 생포되어 그들이 진술하기를 마을에 살고 있는 7인도 자기들이 산에 가기 전 동조자라 하자 당국에 소환되어 모진 고문 끝에 군법회의에서 7년 징역을 받고 1949년 4월에 목포형무소로 갔으며 6·25 발발 후 소식이 묘연함.

※ 각종 행형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목포형무소 재소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기억 (4·3위원회 신고서)

○ 오태순 : 4·3희생자 오태순은 1948년 4·3사건 당시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302 번지에서 농사일하면서 살았는데 1948년 4·3사건이 발생하자 민보단·의용대 대장으로서 부락을 지켜오던 중에 1949년 9월에 경찰에서 연행하여 갔는데 소식에 의하면 구형받고 목포형무소에서 한두 번 소식이 있었는데 1950년 7월 이후 종무소식하여행방불명이 된 것임.

○ 김영천 : 4·3사건희생자 김영천은 1928년 2월 27일 제주시 오라리에서 출생 살아오다가 1949년 목포형무소로 가게 되었음. 그 후 김영천은 몸이 아팠다고 전보가왔는데 가족들이 가보지 못하게 되었음. 1950년 6·25 동란이 터져 그 해 7월 3일목포형무소에서 사망하게 되었음.

○ 양봉률 : 4·3사건 당시 경찰에서 소개명령을 내려 신례리 주민들과 함께 공천포

에 집결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후 소식이 없었음. 그 후 목포형무소에 있다는 편지 연락이 있었으나 6·25 발생 후 행방을 알 수 없음.

○ 양남윤 : 4·3사건이 발생하여 계엄령이 내려져 신례리 주민들이 공천포로 소개한 후 경찰서로 연행 후 소식이 없다가 목포형무소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6·25 발생 후 소식이 없음.

5. 제언 - 진상조사의 필요성

이상으로 1949년 9월 탈옥사건 때로부터 1950년 6·25 직후까지 목포형무소에 수 감되었던 제주출신 4·3관련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이기간에 목포형무소에는 일반재판을 거친 재소자 120여 명, 1948년 군법회의 대상자 251명과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215명 등 총 600여 명의 제주출신 재소자가 있었다. 이들은 ① 1949년 탈옥사건에 연루되어 총살된 사람 ② 탈옥사건에 참여하지 않아서 출소한 사람 ③ 장기징역형 재소자 또는 탈옥사건 이후 새로 수감된 자로서 1950년 6·25 직후 총살된 사람 ④ 미확인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현재까지 조사된 행형자료를 근거로 이들 유형별 해당자를 집계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 목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 유형별 인원(1949. 9. 14~1950. 7)

탈옥사건 피살자		출소자		6·25직후 피살자		미확인자	
일반재판	군법회의	일반재판	군법회의	일반재판	군법회의	일반재판	군법회의
26명	26명	17명	72명	62명	?	약15명	368명

행형자료를 통해 행방이 확인된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105명, 군법회의 수형인 98명 등 203명 정도에 불과하다. 400명 가까운 수의 재소자 행방이 행형서류상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90명 정도의 출소자를 제외하고는 탈옥사건 피살자나 6·25직후 피살자의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사망 통보도 없었고, 시신 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100여 명또한 행방불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1949년 9월 이후 목포형무소 재소자600명 가운데 가운데 500명 가까운 사람들의 행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들 500명의 행방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두고자 한다. 우선 1949년 탈옥사건과 관련한 의문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자.

탈옥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국내 신문과 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성에 보낸 자료에는 "대부분의 탈옥자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으로 복역 중에 있던 정치범들"이라고 하였고, 권승렬 법무부장관 또한 "주동자는 대개 제주도 반란사건에 참가했던 장기수

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자단에게 밝혔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사건 처리가 끝난 후 발표된 최종 집계에 따르면, 탈옥 죄수 413명 중 체포 85명, 사살 298명, 자수자 10명, 미체포 23명이라고 하였는데, 4·3관련 재소자로서 탈옥자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52명에 불과하다. 과연 52명에 불과한 인원을 가지고 탈옥자 대부분을 제주출신으로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탈옥자명부에 기재된 52명 외에 또 다른 제주출신 탈옥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전체 탈옥수의 인적사항과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52명 가운데 일반재판 수형인으로는 징역 2년형 이상,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는 무기·징역7년형 등의 장기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옥사건을 체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년형 미만의 단기수들은 탈옥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1949년 군법회의에서 징역7년형을 받은 215명 가운데 12명만이 탈옥자명부에 기재된 점이다. 다른 장기수들 상당수가 탈옥사건에 가담했음에 비추어본다면 12명이란 인원은 이해하기 힘들다. 목포교도소 소장 자료 검색을 통해 전체 탈옥수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탈옥사건과 같은 공식적이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잘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 국내 신문과미국대사관의 본국 보고서류 등에 상세하게 밝혀져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 당국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잘 남기고 있지 않다. 이 부분 또한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6·25직후 피살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차례이다. 전쟁 발발 당시 목 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4·3관련 재소자는 4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기 록원에 소장 중인 『6·25당시 탈옥수명부』(법무부, 1951)에는 목포형무소 재소자 가 운데 탈옥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재판을 거친 4·3관련자로서 총 62명이 확인된다. 이들은 자발적인 '탈옥'이 아니라 군에 의해 집단 총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으며, 유가족들 대부분이 6·25 직후 총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1951년 법무부 검찰과가 '총살자'를 '탈옥 수'로 서류상에 위장 기재한 것이다.

200명 가까운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들도 이때 대부분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 4·3위원회에 신고한 양영빈·강태훈·정영수·박창숙·김경옥·강익수·문재선 등 면회, 서신 왕래, 기타 증언 등을 통해 전쟁 당시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임이 분명하다고 밝혀진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한 명도 없다. 특히 양영빈의 경우, 목포에 있는 7촌조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진술도 있다. 허균(허대호)의 경우에는 1949년 7월경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12월경에 모친이 면회갔다온 후 6·25가 터지면서 실종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왜 1949년 탈옥수명부나 1951년 탈옥수명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한편 6·25직후 피살자의 총살 시기는 1950년 7월 14일 이후로 추정된다. 재소중행불자 이태신의 신고서에 보면, 가족들이 1950년 7월 10일까지는 목포형무소에 수

감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억하였다. 이 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김두병은 같은 해 7월 1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제 목포형무소의 행방을 조사한 결과 발표문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체적으로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에 한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새로이 확보한 행형자료를 근거로 1949년 탈옥사건 희생자 52명과 1950년 전쟁직후 피살자 62명의 명단을 찾았다는 성과를 내세우기 전에 400여 명의 미확인자가 오롯이 드러난다는 진실드러냄의 한계에 부딪혔다. 확인된 명단이 있을지라도 이들 유가족이 시신을 수습한 사례는 단한 건도 없다는 점도 큰 의문으로 다가왔다. 정확한 탈옥희생자·피살자 명부의 확인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희생자의 시신 처리, 무덤 및 묘역 조성 여부, 묘적부 관리 여부, 암매장지 확인 등 현지 진상규명의 또 다른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향후 목포형무소를 비롯한 전국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총살된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4·3관련자 부분에 대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발표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과제를 더 생산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4·3운동 진영이 끊임없는 진상규명운동을 해야 한다는 연대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면 다행이라고 여겨본다.

□ 부영성, 『죽헌수상집』, 도서출판 디딤돌, 1997.

< 자수에서 형무소행 >

사실은 자수한다고 했자 무엇을 자수하겠는가. 대동청년단장을 지내면서 마을 청년들의 시위나 입산을 못 말렸다고 산에서 백지 날인을 받을 적에 이를 저지 못해이에 연루되었다는 것뿐이다.

자수는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제주지구 계엄 사령부에서 도 전체적인 범위에서 좌익계열에 포섭된 사람들에게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는 포고령이 공포되었다는 전갈을 받고 하도리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윤 석준 씨에게 이 뜻을 전했더니 세화리 김대홍 씨가 하도공회당에 온 때에 합의가 되어서 세화지서로 출두했다.

1948년 12월 5일 21시에 제주서로 연행되어서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귀향 후의 경력을 맞히고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얻어맞기도 하고 둘러메어 다치기를 당하기도 했다. 어쨌든 살 수는 있구나 하는 안도감은 가질 수가 있었다. 구금된 지 10여일쯤 되는 날, 호명하는 대로 뒷마당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때가 1948년 12월 15일이다. 어디로 송치할 것인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이 면회 오셨다.

육지로 이송한다는 말씀이었다. 추울까봐 당신님 내복을 벗어 입혀주시고 돈과 떡도 싸주셨다. 추위도 추위지만 어쩐지 살얼음판에 놓여진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장인어르신도 마음이 놓이지를 못하는 심정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날은 저물어 장내가 어두컴컴해서 가까운데 있는 사람만을 식별할 수 있었으니 더더욱 암울함은 더했다. 약 30분가량 지나더니 머리를 숙이게 하여 세 줄로 정렬시키고 앞 뒤좌우로 포승을 채우고 양측에 무장 경찰관의 경계 태세 아래 큰길로 행진시킨다. 어둡긴 해도 장인어른이 길가에 계심을 알 수 있었다. 눈짓으로나마 살아 돌아올것이라는 마음과 무사하길 바라는 장인어른의 심정이 서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삼엄한 경계 속에 산지 동부두에 이르고 보니 목포행 자그마한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 줄줄이 승선하라는 호령이 내려진다. 차디찬 바람은 마음과 육체를 한없이 쓰리게 한다. 그러나 취조 받는다고 얻어맞았던 생각을 하니 다소 마음이 놓이게 됨을 느꼈다.

뒷날 배에서 내리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다음날에 형무소 광장으로 집합시켜서 군법재판에서 결정된 대로 죄명은 내란죄, 형기는 금고 1년에서 15년까지 언도되는데 나는 1년형을 언도받았다. 15년이란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평온할 리가 없다. 머리를 숙이고 울먹이는 정황이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4·3사건이 거의 마무리 될 무렵이었다면 장기형도 기소유예 처분에 불과한 것이

었을 것이다.

1) 외역(外役)

1948년 12월 25일 아침 6시(미명)에 감방문을 열고 1459이라는 죄수의 고유번호를 부른다. 중앙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중앙이란 형무소 건물이 십자형 건물인데 낭하가 서로 접촉되는 로터리인데 약 50평의 넓이였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모였으나, 석산에 간다는 말이 나돌았다. 충청도에 석산이란 지명이 있다는 말은 있으나 목포의 석산은 들어보지 못했다.

중앙에 모인 사람이 100명은 되었으리라. 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호명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는 식당으로 인솔하여 초신 한 배와 외근복을 주는 것이었다. 그제 야 외근을 하게 되는구나 했다.

징역살이에는 콩밥을 먹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쌀은 10%도 안 되는 순 보리밥이다. 밥에는 등급이 있어서 1, 2, 3,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 밥덩어리가 배식되었다. 1등급 밥은 외역죄수에게 주고 4등급 밥은 작업을 아니하는 사람에게 배식되었다. 국은 큰 대접에 배춧국이다. 오랜만의 일이다. 식사가 끝나자 목포 석산으로 가서 돌 깨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작업반이 조직되었다. 7인씩 14개 반이 편성되었다. 7인 중 한 사람씩 하루 당번을 마련하는데 그 당번은 50×30×100㎝의 나무상자에 반장을 제외한 6인분의 돌끌과 망치 두 개씩과 야 50여 개가 들어있어서 혼자 지고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어름 하다가는 남보다 뒤떨어져서 무거운 것을 지고도 달리기를 해야만 한다. 오랜동안 감방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서 어려운 고역이었다.

이 날은 간밤에 내린 눈 때문에 신고 간 초신은 100보도 걷기 전에 신발이 젖어서 발이 시리고 모자를 안 썼기 때문에 걷다 보니 내리는 눈과 바람에 견디기 어려웠다. 2, 3일 지나자 얼굴이 퉁퉁 부었는지 세수할 적마다 둥시렁하게 부어서 어랑어랑한 얼굴이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일주일이 지났는가. 형무소의 식당 잡역으로 근무하는 종달리 출신 부옥만 씨가 모자와 장갑을 보내주어서 그야말로 한량이 되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또 영 치금이 있는 사람은 고무신을 내준다는 것이어서 그런대로 피복이 갖추어진 셈이 다. 또 부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일등급 밥을 먹게 되니 마음이 흡족했다.

그런데 $50\sim60$ kg 무게의 잡석을 어깨에 메고 100m 거리를 운반하는 일은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다. 돌구멍을 파는데 끌을 잡은 왼손의 손가락 두 개가 망치에 맞아서 패이니 뼈는 무사해도 살이 찢기고 손톱이 손상되었다. 붕대도 약도 없었다. 헝겊을 주어다 싸매었으나 끌을 망치로 두드릴 적마다 아픔이 더했다. 통증이 머리와 가슴에까지 와 닿는다.

20일 동안이나 그 통증을 참느라 혼이 났다. 그 동안은 세수할 때에 물기가 침입

안 되게 조심해야 하니 오른손으로만 세수를 해야 했다.

손톱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는 작업을 할 때에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언제나 싸매야 함은 물론이다.

목포 석산의 설한풍은 매서웠다. 끌 잡은 손의 피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다. 벙어리장갑을 부옥만 씨로부터 받게 되어 천만다행이었다. 그 장갑도 열흘이 넘어가면 흠이 났다. 터진 곳은 꿰매어야 한다. 바늘도 실도 없지 않은가.

바늘은 강철 철사를 구해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갈고 바늘귀는 쇠망치로 납작하게 해서 다른 철사 끝으로 구멍을 만들었다. 실은 헝겊을 주어다가 올을 빼서 실을 만든다. 이리하여 저녁을 먹고 취침시간까지 장갑을 수선한다. 이런 일은 형무소에서도 묵인해서 시간을 보내는 데도 한몫 보게 되었다.

실은 $40\sim50$ cm 길이로 만들려면 옷감도 길수록 좋고 질긴 옷감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들 작업반원이 100여 명이나 되니 상부상조하면서실을 만들었다.

석산에서 돌을 깨는 데는 먼저 암적에 깊게 여러 개의 구멍을 파서 여기에 화약을 담고 심지를 길게 늘여 놓고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킨 후에 불을 붙인다. 굉음을 울리면서 석산의 돌이 부서지면서 굴러 떨어진다. 이 돌들은 용도설비에 의해서 평지로 옮겨지게 된다.

돌의 크기는 $4 \times 6 \times 10$ m 가량이 되는데 돌의 질과 크기에 따라 벽돌, 비석돌, 도기통, 다다미돌 등으로 만들 수 있게 깨야 했다.

먼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끌과 망치로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야를 꽂고 작업반장이 큰 함마로 야를 기술적으로 차례로 여러 번 두들겨 패면 의도한 대로 큰 암석이 깨어진다. 여기에 잡석도 나온다.

작업반원 중 출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하는데 그 사람은 출소하면 재소자의 가정에 안부를 전해주기도 하고 재소자를 위해서 담배를 일정한 자리(암석 틈)에 놓 아두고 가면 한 개비를 여럿이 한 대씩 피우면서 돌린다(담배를 피우려면 관리들이 안 보이는 곳을 택해야 하고 시간도 점심시간 후라야 되었다).

2) 변기(변통)

"측간과 사돈은 멀어야 좋다"는 속담이 있으나 그 당시로는 경비하기가 문제라서 감방 안에 나무통 변기를 사용했다. 오랫동안 살다보니 냄새에는 무감각이 되고 말 았다. 본능적인 취각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때 가 있다.

일주일 내지 10일 만에 보리밥 누룽지가 배당되어 이것을 잘 씹어 먹었으면 좋은데 물 반질래기 누룽밥이니 그냥 들여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사를 하는 사람이적지 않았다. 부득이 식사 때에도 변을 보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눈망울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감방 바닥이 널판은 바람이 새지 않게 되어 있고 침구란 이불은 두 장이고 석 장

이고 수용된 인원과 방 크기에 따라 맞게 한 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10명 내지 15명이 같이 덮게 된다. 물론 요이불은 없다. 서로 발 막아서 취침하는데 상대방의 발을 안아서 잔다. 서로 서로의 체온과 온기가 통하게 된다. 피로도 가시게 하여 위로가 좀 된다.

하절에는 침구를 거두어 가기 때문에 옷은 밤낮 입고 있어야 하니 이와 벼룩의 소굴이 된다. 아무리 잡아보아야 번식에 못 따른다. 사형수이 말에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귀한 피를 빨아먹고 내가 죽거든 ○○으로 잘 가게나 해다오 내 친구야 내 동포야!』

3) 콥대산이(마늘)도 청심환보다 낫다

소금은 반찬 중의 반찬이다. 소금 없이는 밥이 안 내려간다. 그 소금은 이를 닦는데 요긴하게 쓰여서 칼칼 쓴 입을 달게도 해준다. 이래서 소금주머니는 필수품이었다.

석산과 형무소의 왕복길은 외진 길이라서 그 근방 농민들이 마늘 부룩을 길가 구석에 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낱개로 주어서 껍질을 벗기고 마늘주머니에 간수해 두었다가 귀중한 약으로 쓰인다. 마음이 우울해서 적막감이 들 때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부룩마늘 한 개를 잘근잘근 천천히 씹노라면 그 향기와 매운 맛은 청심환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콥대산이란 말은 몽고족이 제주도에서 100여 년간이나 판을 칠 적에 가져왔던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마늘의 이름이다. 이 마늘이 제주 토종으로서 매운맛과향기가 진해서 요즘 마늘과는 다르다. 6갑마늘보다 갑이 작아서 멸종되고 말았다.

4) 이웃의 온정

형무소에서의 잡역이란 작업장에서 복역자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장기 복역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임명하여 그 작업장 옥리의 명에 따라 독보가 허용되었다.

식당 잡역으로 있는 부옥만 씨는 종달리 사람으로 각 감방을 돌아다니다가 부영 성이란 표찰을 발견하고는 작은 문틈으로 부영성이가 어느 분이오 하고 물어온 것 이다. 제가 하도리에 사는 부영성이오 하고 말을 했을 뿐 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 후로 특별히 누룽지도 갖다 주고 설사가 나면 쌀죽도 갖다 주어서 고맙게 먹기도 했는데 더욱이 외역을 나갈 때에 방풍모와 장갑을 갖다 주어서 설한풍을 견디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 사람은 7년형인데 나는 10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었으나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 인사말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었다.

옥중에서도 외역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초가을이 되어 고추가 익어갈 무렵에는 고 춧잎과 고추국을 먹게 되었다. 그 매운 맛은 사회에서 먹었던 맛이 아니고 젓갈 맛 도 역시 별 맛이다. 우리들이 출소할 때에 한 말이 있다. '집에 가면 반찬 말을 않 기로! 보리밥이라도 반찬이 없어도 자근자근 씹어서 먹으면 달콤달콤한 맛이 우러 나오니 무슨 반찬이 필요하겠는가!고.

석산에서 노역을 한 지 4개월 만에 잡역을 맡게 되었다. 사무용 책상 대신 상자를 이용했다. 11개 작업반의 작업량을 전달하고 작업량을 기록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석재나 잡석을 사러 온 사회인에게 전표에 따라 내어주는 일들을 했다. 담당관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관리인인 셈이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 사람들에게서 담배 몇 개비를 얻을 수 있어서 몇몇 노역자들과 나누어 피울 때도 있었다.

<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

1949년 8월 일 오후 5시 본인 외 석산 외역 인원 100여 명이 3공장(외역자의 임시식당)에 입실이 끝난 때였다.

방송을 통해서 '인민군이 목포시내에 들어와서 모든 기관을 점령하고 있으니 수 감된 동지 여러분은 광장(형무소 구내)으로 모이라! 우리 동지들은 인민군을 환영하 기 위해서 형무소 옥리들의 무장을 해제했으니 안심하고 모여라. 빨리 빨리 모여라!'였다.

이때 목포형무소에는 여순반란사건과 4·3사건 관계자가 수용되어 있었다(잡범도 있지만). 방송을 한 사람은 수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3공장에 수용된 우리들은 그 날도 석산 채석장에 갔다 돌아왔으나 시내에는 아무런 이변이 없었으므로 외부인사들이 수감자와 연결되어 탈옥사건을 일으켰음을 알게 되었다. 소내 방송시설을 강제 접수해서 하는 말이 공산군이 목포시청을 점령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동자들은 옥리들이 소지한 소총과 권총을 탈취하고 소내에 있는 화물차로 옥문을 탈출하려는 계획이었다. 목포시의 지리적 조건상 북상하는 데는 중도에서의 경찰 병력과 조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망타진 당하고 말았다.

우리와 같은 날짜에 목포형무소에 입소한 제주사람들도 어러 이 사건에 감다했는 지 이 사건이 끝난 후에는 내가 아는 제주도 사람들 중 영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 있었다. 이러한 선전에 기만당한 사람들은 결국 아까운 생명까지 희생당하고 말았다.

3공장에서 식사하러 들어간 우리들 100여 명은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고 있었다. 밤늦게야 머리를 숙인 채 앞 뒤 사람이 서로 붙잡은 형태로 감방에 수용되었고 며칠간을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인 자세로 주먹밥을 먹었다.

뒷날부터는 150cm 길이의 굵은 왕대로 매를 맞는 소리와 맞아서 못 견디는 아우성 소리가 감방에서도 들리는 정도였다.

우리들도 잘못이 없어도 이런 꼴이나 되지 않을까 해서 며칠 간을 조바심을 쳤는데 취조도 받지 않고 넘었다. 제주도 4·3사건을 회상할 때 형무소란 데는 범죄 여부

를 정확히 파악하는 양심적인 수사관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약 일주일이 지나서 사건이 일단락되어 비로소 정상적으로 외역에 임할 수가 있 었다. 해방된 기분이었다.